「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3차 정책토론회:

“UN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탈시설 권리 국제적 · 국내적 실천 방안”

2021년 4월 22일(목) 오후 2시

YouTube 최혜영TV 함께혜영

주제발표

좌 장 김미연 (UN장애인권리위원회 부의장)

〈발제1〉 UN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탈시설과 해외 장애계의 규범활용 사례
- 최한별 (한국장애포럼 사무국장)

〈발제2〉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개인통보제도를 통해 드러난 탈시설의 당위성 (형가리 시설소규모화에 대한 개인진정사례)
- 스티븐 알렌 (Validity Foundation)



토 론

- 정다혜 (사단법인장애인법연구회 변호사)
- 박마루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 김소영 (UN인권정책센터 장애인권담당)
- 이인영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2과 조사관)
- 신용호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

공동주최 : 국회부의장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민석, 김성주, 남인순, 강선우, 고영인, 김원이, 서영석, 최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약자의 눈

공동주관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사단법인 두루,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한국장애포럼,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웰페어이슈,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법연구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식 순

▸좌장 : 김미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부의장)
▸수화통역 : 윤남, 이현정

	시간	내 용
사전행사	14:00~14:30	▸사회 : 김필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기획실장) ▸국회의원 인사말
토론회	14:30~14:40	<발제 1>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탈시설과 해외장애계의 규범활용 사례 - 최한별 (한국장애포럼 사무국장)
	14:40~14:55	<발제 2>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개인통보제도를 통해 드러난 탈시설의 당위성 : 헝가리 시설소규모화에 대한 개인진정사례 - 스티븐 알렌 (Validity Foundation 공동대표)
	14:55~15:00	▸좌장 : 김미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부의장)
	15:00~15:40	<지정 토론> ▸정다혜 (사단법인장애인법연구회 변호사) ▸박마루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김소영 (유엔인권정책센터 장애인권담당) ▸이인영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2과 조사관) ▸신용호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
	15:40~15:55	▸종합 토론 및 질의 응답
	15:55~16:00	▸폐회 및 정리

목 차

인 사 말

□ **김상희** (국회부의장) ····· 9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11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13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15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17
□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19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21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23
□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25
□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 27
□ **윤종술**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 ····· 29

주제발표

□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탈시설과 해외 장애계의 규범 활용 사례** ····· 33
최한별 (한국장애포럼 사무국장)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개인통보제도를 통해 드러난 탈시설의 당위성 '헝가리 시설소규모화에 대한 개인진정사례'** ····· 49
스티븐 알렌 (Validity Foundation 공동대표)

토 론

□ 정다혜 (사단법인장애인법연구회 변호사) ····· 55
□ 박마루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 59
□ 김소영 (유엔인권정책센터 장애인권담당) ····· 63
□ 이인영 (국가인권위회 장애차별조사2과 조사관) ····· 71
□ 신용호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 ····· 75

부 록

□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최혜영의원 등 68인) ····· 79
□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결정문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마련을 위한 정책권고 ····· 119

인 사 말

□ 김상희 (국회부의장)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 윤종술 ((사)한국장애포럼 상임대표,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



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국회부의장 김상희입니다.

먼저 「UN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탈시설권리 - 국제적·국내적 실천 방안 모색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를 저와 함께 공동 주최하는 김민석, 김성주, 남인순, 강선우, 고영인, 김원이, 서영석, 최혜영, 장혜영 의원님과 의원연구단체 '약자의 눈', 그리고 함께해 주신 여러 공동주관 단체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서 '가짜정당'을 표방하는 '탈시설장애인당'이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장애인 당사자 11명이 11대 장애인 정책 요구안을 내걸고 활발한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실제 후보 등록과 당선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보호라는 명분 아래 장애인을 시설에 분리하는 사회문화와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메시지를 많은 시민들께 전달하는 의미 있는 노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장애인단체를 중심으로 지난 15년간 탈시설에 대한 공론화 움직임이 있었지만, 제도적 뒷받침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장애인거주시설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9년 말 기준 1,557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설 거주 장애인도 여전히 3만명 가까이 됩니다. 장애인이 진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3차 정책토론회에서 다룰 'UN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을 논하는 데 있어 반드시 검토해야 할 기본 원칙이자 정책 지침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함으로써, 탈시설이 왜 선택이 아닌 권리인지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의 실효성 담보를 위한 튼튼한 기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지난 3월 비준촉구 결의안이 발의된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와 관련해서도 앞선 국가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개인진정제도와 직권조사제도가 탈시설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오늘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주신 김미연 UN장애인권리위원회 부의장님과 발제를 해주실 최한별 한국장애포럼 사무국장님, 장애인 권리증진 NGO 발리더티(Validity) 재단의 스티븐 알렌 공동대표님, 토론자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 드립니다. 귀한 말씀 잘 듣고,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과 관련 제도를 발전시켜가는 데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국회의원 김민석입니다.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3회차」 UN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탈시설 권리, 국제적·국내적 실천 방안 모색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UN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호하고 자립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는 국제조약입니다.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는 한국 정부에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권장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탈시설과 관련한 신체의 자유 및 안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대우 또는 처벌 등으로부터 자유하고 착취 · 폭력 · 학대에서 벗어나야 하며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 동참을 통해 탈시설의 전략과 장애인 인권 모델에 기반한 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하고, 장애인권리협약을 근거로 탈시설의 당위성을 확보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권리가 존중되고 동등하게 인정되며 국내에서도 법적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장애인의 권리가 국제적 수준과 동일한 수준에서 다루어지고, 그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토론회가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합니다.

몇 달 전 탈시설 장애인 자립 생활‘삶’ 기록집을 보았습니다.
그중 한 타이틀이 생각이 납니다.
‘두 번째 나의 삶.’
두 번째 삶뿐 아니라 첫 번째 삶도 행복하고 따뜻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 자신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새로운 발걸음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법과 제도, 정책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발전시키겠습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부모는 자녀보다 하루만 더 살기를 바랍니다.
보호자가 없어도, 시설이 없어도 자립 가능한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하시는 모든 분의 가정에 건강과 안녕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를 공동주최해주신 김상희 부의장님, 김민석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최혜영, 장혜영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권리보장에 언제나 큰 힘이 되어주시는 '약자의눈'등 장애인단체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UN장애인권리협약(CRPD)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CRPD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06년 UN에서 채택한 국제인권조약입니다. 그러나 이 협약은 반쪽짜리 협약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당사국에 대한 직권조사와 절차 등의 내용을 다룬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선택의정서」비준을 유보한 채 UN장애인권리협약을 채택했기 때문입니다.

2014년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선택의정서'비준을 권고했습니다. 동시에 탈시설 전략의 실효성 부족, 장애인이 공동체와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조치의 부족, 모든 필수적인 지원서비스 정책 부족을 우려하며 장애인 인권 모델에 기초한 탈시설화 전략 및 서비스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UN의 권고로부터 5년이 지난 2019년 3월, 정부는 '제 2·3차 병합국가보고서'에서 선택의정서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비준 실행을 위한 정

부의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상황입니다.

올 3월 김예지 의원을 비롯한 74명의 국회의원은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선택의정서를 비준한다고 해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견해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어겨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작년 말 발의된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은 큰 의미를 지닙니다. 장애인 탈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 외에도 인권침해 시설 조사,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체계 등 선택의정서와 깊은 관련이 있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우리보다 먼저 선택의정서와 CRPD에 비준하여 장애인 탈시설에 성공한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 자리를 통해 선택의정서와 장애인권리협약을 근거로 탈시설의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해외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탈시설 지원체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구병 국회의원 남인순입니다.

'UN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탈시설 권리, 국제적.국내적 실천방안 모색'을 주제로 「장애인탈시설지원법」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3차 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토론회를 공동주최하는 김상희 부의장님, 김민석.김성주.강선우.김원이.고영인.서영석.최혜영.장혜영 국회의원님, 「약자의 눈」과 공동주관하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등 여러 장애인.인권단체 관계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은 전세계가 다루고 있는 정책과제이자 장애인 인권향상에 반드시 필요한 요건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어떤 나라에 태어나냐에 따라서 극단적으로는 평생을 시설에 머물며, 자립적 삶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장애인이 있고, 반면에 사회적 자원과 관심을 바탕으로 비장애인과 큰 차이없이 독립적인 삶을 사는 장애인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장애인 탈시설과 자립은 국제적인 연대와 공조를 통해 장애인 인권을 향상시키려는 노력해왔습니다.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과 관련한 국내외의 좋은 정책 사례를 공유하면서 새로원 법과 제도를 만들고 이를 도입하기 위한 사회운동이 활발해지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게다가 UN장애인권리협약은 국가 간의 협약으로 각 정부가 숨김없이 협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정하고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장애인 인권향상을 위한 유일한 국제협약인만큼 우리나라도 협약의 내용을 잘 이행하도록 감시하고 촉구하는 국회의 역할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에 오늘 토론회를 통해 UN장애인권리협약의 탈시설 및 자립의 권리 내용을 확인하고, 해외 사례와 함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논의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최혜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탈시설지원법」 통과를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토론회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 평화를 기원합니다.

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선우입니다.

「장애인탈시설지원법」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가 드디어 3차를 맞았습니다. 숨 가쁘게 이어지는 공론의 장에 뜨거운 열정으로 함께 해주시는 모든 내빈 여러분께 환영과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또한, 이처럼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기 위하여 함께 힘을 모아주신 장애인단체 활동가 및 관계자 여러분과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UN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이하 CRPD)에 기반한 탈시설 권리를 국제적으로, 또 국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CRPD은 2006년 12월 유엔총회에서 회원국 192개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인권조약으로 전문과 본문 50개 조항, 그리고 선택의정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중 선택의정서는 장애인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었으나 국내에서 구제절차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는 개인진정제도와 당사국의 협약 위반에 대한 신뢰할 만한 정보가 발견될 경우 UN장애인권리위원회가 당사국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직권조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CRPD 권리협약에 대해서는 비준했지만, UN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와 계속되는 장애계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선택의정서에 대한 비준은 요원한 실정입니다.

선택의정서 비준과 이를 통한 탈시설 권리의 보장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등 관련 모든 부처의 찬성, 국가인권위원회 비준 권고의견 표명,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연대, 나아가 국회의 적극적 노력 등이 모두 필요합니다. 또한, 선택의정서가 단지 비준에 그치지 않고 국내에서 충분한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국내 법원의 인식변화와 아울러 이를 이행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절차 개선 역시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가야 할 길이 무척이나 먼 셈입니다.

이 점에서 지난해 연말 최혜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제가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을 중심으로 CRPD 선택의정서 비준에 관한 사안을 살펴보는 일은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 생각됩니다. 해당 제정법에서는 장애인의 탈시설에 관한 내용과 더불어 CRPD 선택의정서 비준과 매우 긴밀한 인권침해시설 조사, 장애인거주시설 축소 및 폐쇄,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체계 등의 사항을 모두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오늘 토론회가 탈시설과 관련한 여러 국가들의 사례를 검토하여 CRPD을 근거로 한 탈시설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선택의정서의 비준을 위하여 점검해야 한 다양한 쟁점들을 선제적으로 확인하고 전략적으로 검토하는 소중한 기회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신 고견을 토대로 국회에서 필요한 일,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시 한번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갑 고영인 의원입니다.

한편에 소외된 장애인들의 자립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탈시설화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중요한 이슈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41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한 현재 아직도 변화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장애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령과 제도들이 현재에 와서는 오히려 독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통합적 제도 적용으로 인해 많은 장애인들이 안팎으로 인권침해 등 피해를 당하고 있고 이에 대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쉽게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UN 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호하고 자립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많은 선진 복지국가들이 이를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의 실정은 세계가 요구하고 있는 기준에 비해 한참이나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이제는 장애인을 시혜적 복지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현행 장애인 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장애인을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지난해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에 맞추어 발의된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이 더욱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이번 발의 된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거주시설을 중심으로 한 시설보호를 전환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분들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과 지역사회 자립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에 따라 앞으로 관련한 쟁점들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따르는 개선과제들을 전략적으로 검토해야만 할 것입니다.

장애인은 모든 분야에서 참여와 활동의 권리를 가집니다. 장애인은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 아닌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서 이제 시민사회와 어우러져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따라서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하며 앞으로 국회와 정부가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한 더 나은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옆에서 지켜보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없앨 수 있는, 삶의 전반에서 기본권이 보장되고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인의 어려움과 함께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드릴 방법을 함께 강구하여 장애인의 원활한 사회 참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김원이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도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3회차 'UN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탈시설권리, 국제적·국내적 실천 방안 모색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특히, 토론회를 공동주최해주신 김상희 부의장님,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님, 김성주, 남인순, 강선우, 고영인, 서영석, 최혜영, 장혜영 의원님과 공동주관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포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좌장으로 함께해 주시는 UN장애인권리위원회 김미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발제자·토론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인간은 관계와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신체적, 정신적인 발달을 이룹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그동안 '시설'이라는 분리된 공간에서 생활할 것을 요구받아 왔습니다. 때문에, 시설 내의 장애인들은 다양한 사회적 관계와 경험을 체득할 기회가 제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4년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정부에 장애인의 '탈시설 전략을 개발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인권에 기반한 장애인 탈시설화 전략을 개발하고, 장애인을 지역사회에 통합시키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이행하라는 요구였습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2017년 ‘탈시설’ 정책을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증발달장애인을 위한 탈시설 정책 부족, 지방자치단체 간 탈시설 지원책 격차 등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장애인이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거주할 것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 가능한 사회, 지역사회의 적절한 지원과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현실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자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경기 부천시(정) 국회의원 국민비타민 서영석입니다.

어느덧 세 번째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연속토론회가 거듭될수록, 장애인 탈시설이라는 공동의 목표에 한 걸음씩 더 가까워지고 있길 바라며, 'UN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탈시설권리, 국제적·국내적 실천 방안 모색'을 주제로 세 번째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최혜영 의원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시민단체 관계자분들과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 상황은 대부분 국민에게 불편함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는 불편한 정도를 넘어 인권과 건강에 위협되는 시한폭탄이나 다름없습니다.

지난해 12월 신아재활원 사례를 보면, 시설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한 이후 거주 장애인, 종사자를 포함해 전체 정원의 42%가 넘는 7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시설이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명제의 모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입소 소식을 들은 신아재활원 장애인들은 거리로 나와 시설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장애인 탈시설을 이행해달라고 외쳤습니다.

장애인 탈시설은 백지에서 새로운 것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국회에서 2008년도 비준한 UN장애인권리협약과, 2011년 정부가 국제적 흐름을 좇아 대규모 시설을 줄이고 장애인 지역사회 생활을 늘린다는 내용으로 개정한 <장애인복지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 대비 2015년 시설 거주 장애인 수는 되려 늘었으며, 2014년 UN 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장애에 대한 인권적 모델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탈시설화 전략을 개발하라는 권고를 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펜데믹 속 어김없이 시설 거주 장애인은 더욱 분리되었고, 감염병에 더욱 취약하게 노출되었습니다.

장애인 탈시설, 이제는 이행해야 합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시설을 퇴소하여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탈시설한 장애인들은 본인의 삶을 '평범한 삶'으로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바램과 외침은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보호한다는 핑계로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살고 싶은 곳 등을 제한하며 획일화된 삶을 강요할 수 없듯이,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도 자신의 삶의 가치를 좇으며 살아가는 평범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에 오프라인 및 온라인으로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 사 말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혜영입니다.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세 번째 순서로'UN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탈시설권리, 국제적·국내적 실천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주신 김상희 국회부의장님,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님, 김성주, 남인순, 강선우, 고영인, 김원이 서영석, 장혜영 의원님을 비롯해 공동주관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과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UN장애인권리협약은 국제적으로 법적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유일한 장애 관련 협약입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에 UN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고, 효력이 발생한 지 어느덧 13년이 지났습니다. 협약을 비준한 국가는 장애인이 당면한 장벽을 제거하고, 장애인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적절한 입법과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지 못했고 협약 의무 이행도 더딘 상황입니다.

특히, UN장애인권리협약 제 19조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는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격리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거주 시설을 중심으로 한 시설보호를 전환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탈시설지원법」에는 장애인의 탈시설뿐 아니라 인권침해시설 조사, 장애인거주시설 축소 및 폐쇄, 지역사회 자립 생활 지원체계 등을 담고 있어, UN장애인권리협약과 관련한 쟁점 및 개선과제들을 전략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의 토론회가 UN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탈시설 권리를 확인하고, 국제적·국내적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국회 차원에서 국내에서 실효성있는 탈시설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UN장애인권리협약을 국회가 비준한 것이 벌써 13년 전의 일입니다.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UN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면, 더 많은 장애인이 이미 지역사회에서 존엄하게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UN장애인권리협약 제14조 '신체의 자유 및 안전', 제15조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 제16조 '착취·폭력·학대로부터의 자유', 제19조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이 가리키는 방향은 명확합니다.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 '탈시설'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차별받던 사람이 더 차별받으며, 이미 취약한 사람이 더 취약해진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감염병 위기는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살아가는 시설을 덮쳤습니다. 국내 첫 코로나19 사망자인 청도대남병원 정신장애인은 그곳에서 20년 가까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13년 전 비준 이후 UN장애인권리협약이 제대로 이행되어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지금보다 줄어들었다면, 그분은 청도대남병원에서 그렇게 돌아가시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보여준 것은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지구적 재난위기 속에서 UN장애인권리협약의 가치가 확인되었습니다. UN장애인권리위원회를 중심으로 '긴급 탈시설'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연대 속에서 국내에서도 장애인거주시설 '긴급 탈시설'을 위한 요구와 논의가 이어

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저는 지난 2월 25일 <코로나긴급탈시설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UN장애인권리협약은 말뿐인 선언이 아니라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져야 하며, 무엇보다 '선택의정서 비준'을 통해 국내 이행을 강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협약을 비준한 국가의 시민들이 협약에 근거해 국제기구에 진정하고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도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이 되어 있었다면 장애인 당사자들의 진정으로 막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장애인탈시설지원법>과 <코로나긴급탈시설법>, 그리고 얼마 전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님이 발의하신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촉구 결의안>까지 국회에서 신속히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3차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주신 김미연 UN장애인권리위원회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발제를 맡아주신 최한별 국장님과 헝가리의 소중한 사례를 말씀해주실 스티븐 알렌님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토론을 맡아주신 정다혜 변호사님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국가인권위원회, 보건복지부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어지는 토론회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시설말고 내집에서' 모든 시민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나갑시다. 저와 정의당은 그 과정에서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 사 말



반갑습니다. (사)한국장애포럼 상임대표와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직을 맡고 있는 윤종술입니다.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3회차가 시작되었습니다. 토론회에 물심양면으로 애쓰시는 국회의원님들과 단체장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토론을 이끌어주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김미연 부의장님, 발제를 맡은 한국장애포럼 최한별 사무국장님, 발리더티 재단의 스티븐 알렌 공동대표님, 토론에 나서주신 법조계, 장애계,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탈시설은 권리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팽팽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탈시설 권리 보장을 전제로 하고,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사회 여건을 개선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탈시설은 어렵지 않느냐, 라는 논의에서 나아가지 못 하고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부양 부담은 여전히 가족의 몫으로 남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분리·배제·제한·거부의 역사가 이토록 뿌리가 깊습니다.

대한민국이 2008년에 비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에 따르면, '당사국은 장애인의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협약 당사국들이 제19조에 명시된 사항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일반논평 5,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독립적으로 사는 것에 관한 사항(2017)'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협약 제19조에 대하여 무려 97개 항에 달하는 일반논평을 발표하게 된 이유는 제19조의 시행에 있어 '탈시설' 개념에 대한 간극과 왜곡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거주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조치에 대하여 심각하게 우려하며, 협약의 목표에 위배되는 것으로 명료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1985년에 발표된 노르웨이 정부의 공식보고서에서도 "시설에서 발달장애인이 처해있는 생활여건은 인간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것, 그러한 상황을 시설의 재조직화나 시설에 자원공급을 증가한다고 실질적으로 변화될 수 없다."고 밝힙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해외 사례를 기반으로, 이제 '탈시설'이 권리냐, 아니냐, 라는 갑론을박이 아니라, '탈시설은 권리다'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장애인의 의지와 선호를 존중하고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 것인지 선택할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내 정책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은 그 첫 걸음입니다.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서로의 짐이 되지 않고,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힘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제발표1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탈시설과 해외 장애계의 규범 활용사례

최한별 (한국장애포럼 사무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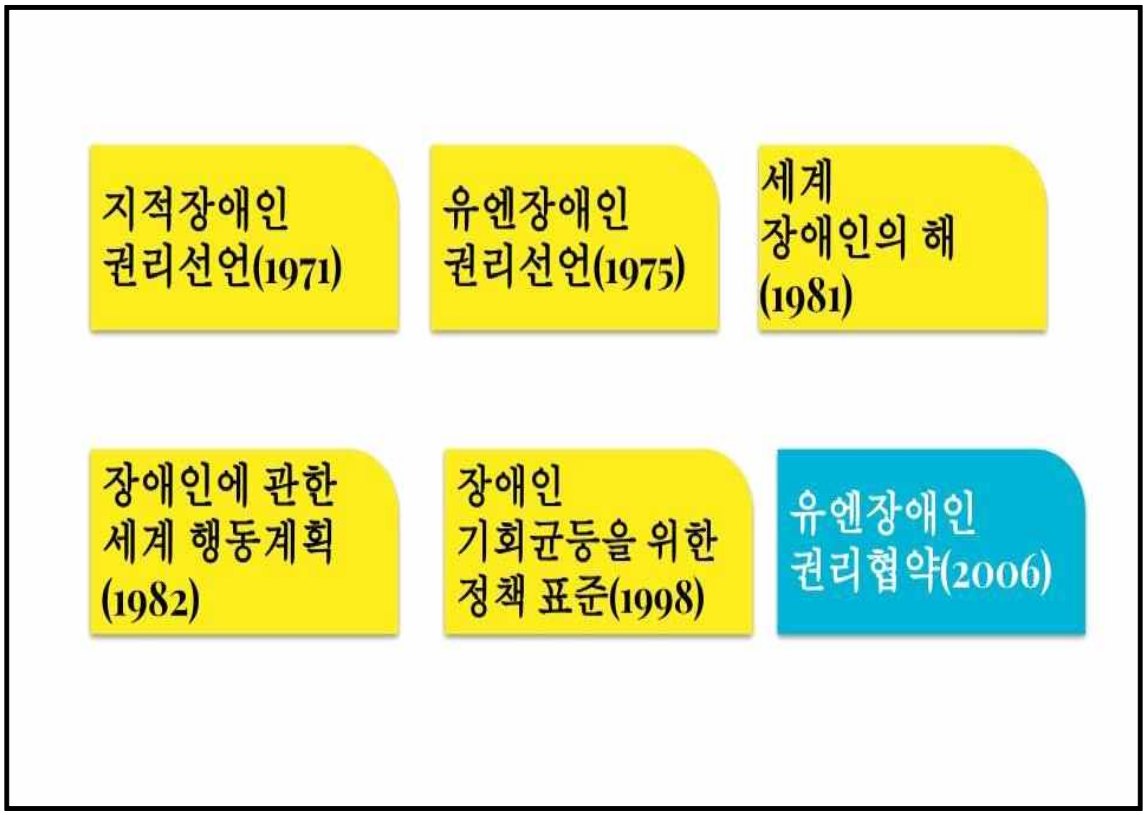


발 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탈시설과 해외 장애계의 규범활용 사례

최한별 ‖ 한국장애포럼 사무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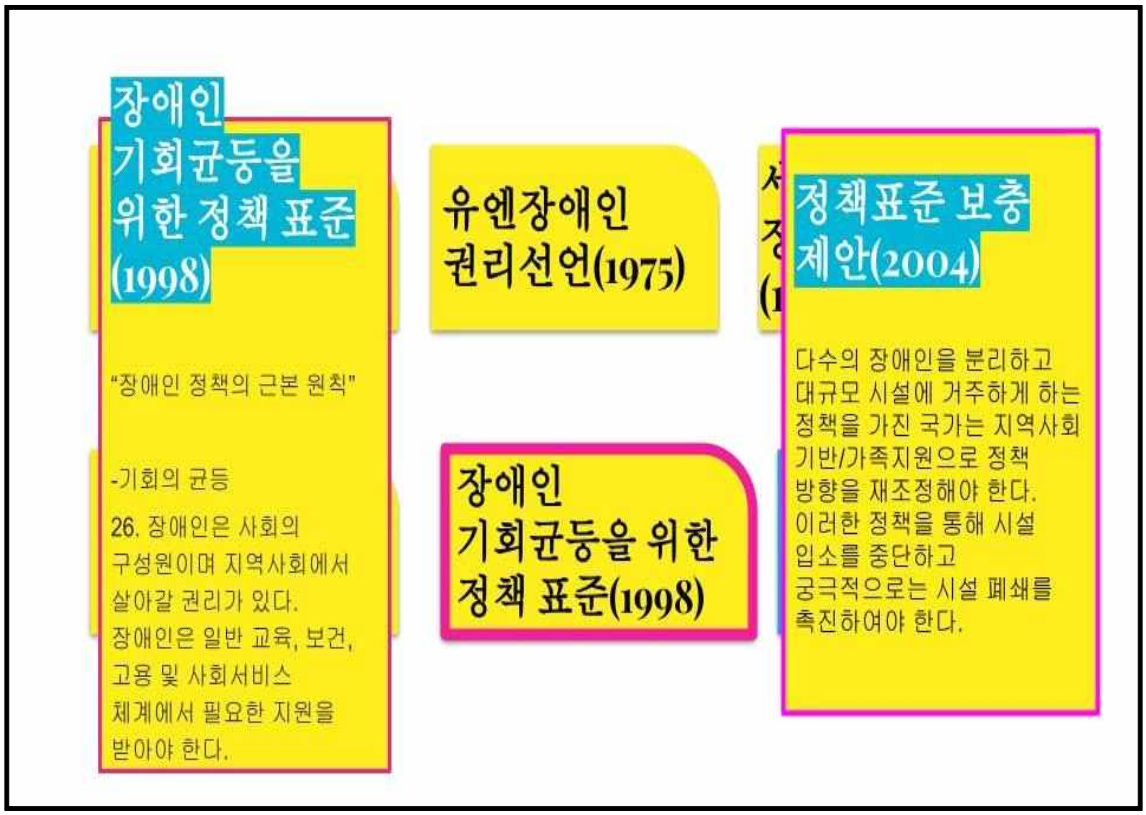



지적장애인
권리선언(1971)
유엔장애인
권리선언(1975)
세계
장애인의 해
(1981)
장애인에 관한
세계 행동계획
(1982)
장애인
기회균등을 위한
정책 표준(1998)
유엔장애인
권리협약(2006)


지적장애인
권리선언(1971)
지적장애인
권리 선언(1971)
4. 지적장애인은 가족들과 함께 살 권리가 있다. 또한 모든 사회 생활에 참가하며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지적장애인과 동거하는 가족들은 부조를 받아야 한다. 만일, 시설에서의 양호가 필요한 자라면 그 시설은 최대한도로 가정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세계
장애인의 해
(1981)
장애인에 관한
세계 행동계획
(1982)
유엔장애인
권리협약(2006)


유엔 장애인 권리 선언(1975)
9. 모든 장애인에게는 가족이나 수양부모와 함께 살면서 사회 활동과 생산 활동이나 오락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주거에 관한 한 모든 장애인은 건강 상태나 건강 개선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차별 대우도 받아서는 안 된다. 장애인이 불가피하게 특수 시설에 수용되는 경우, 그곳의 환경과 생활 조건은 가능한 한 그와 연령이 똑같은 비장애인이 정상적으로 누리는 생활 조건과 유사해야 한다.
유엔장애인 권리선언(1975)
세계 장애인의 해 (1981)
장애인 기회균등을 위한 정책 표준(1998)
유엔장애인 권리협약(2006)


지적장애인 권리선언(1971)
장애인에 관한 세계 행동계획 (1982)
장애인에 관한 세계 행동계획 (1975)
많은 장애인이 지역 내 일상적인 사회 생활에서 배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시설에 갇혀있다. 사실 기관에 국한된다. 과거의 한센인 수용지는 부분적으로 사라졌고 큰 시설들도 예전처럼 많지 않았지만, 정당한 요건 없이 시설에 수용된 사람이 너무 많다.
세계 장애인의 해 (1981)
유엔장애인 권리협약(2006)


장애인 기회균등을 위한 정책 표준 (1998)
"장애인 정책의 근본 원칙"
-기회의 균등
26. 장애인은 사회의 구성원이며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 장애인은 일반 교육, 보건, 고용 및 사회서비스 체계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
유엔장애인 권리선언(1975)
장애인 기회균등을 위한 정책 표준(1998)
정책표준 보충 제안(2004)
다수의 장애인을 분리하고 대규모 시설에 거주하게 하는 정책을 가진 국가는 지역사회 기반/가족지원으로 정책 방향을 재조정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시설 입소를 중단하고 궁극적으로는 시설 폐쇄를 촉진하여야 한다.


UN CRPD에 담긴 탈시설'권리'

3조 일반원칙

CRPD에 담긴 모든 권리에 적용되어야 할 기본 원칙

이 협약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중략)

가. 천부적인 존엄성, 선택의 자유를 포함한 개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다.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 및 통합

제4조 일반 의무

'시설 수용의 역사' 종식의 의무

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이행을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채택할 것

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구성하는 기존의 법률, 규칙, 관습 및 관행을 **개정 또는 폐지**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다.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서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고려할 것

라. 이 협약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일체의 행위나 관행을 행하는 것을 삼가고, 정부당국과 공공기관이 이 협약과 일치되도록 업무를 수행할 것을 보장할 것

마. 모든 개인, 기관 또는 사기업에 의해 행해지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제8조 인식 제고

'장애인은 보호가 필요하며,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사회의 차별적 인식 개선 당사국의 의무

1. 당사국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즉각적이고, 효과적이며, 적절한 조치를 채택할 것을 약속한다.

가. 가족 단위를 포함하여 사회 전반에서 **장애인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심을 고취**할 것

나. 성별과 연령을 이유로 하는 것을 포함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및 유해한 관행을 근절**할 것

다. 장애인의 능력과 이들의 기여에 대한 인식을 증진할 것

제19조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

'탈시설-지역사회 자립 권리' 가장 직접적으로 규정

이 협약의 당사국은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을 통하여 **지역 사회에서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며, 장애인이 이러한 권리를 완전히 향유하고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는 것이 포함된다.

가.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거주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를 가지며, 특정한 주거 형태를 취할 것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나.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생활과 통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 보조를 포함하여, 장애인은 가정 내 지원서비스, 주거 지원서비스 및 그 밖의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

다. 비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와 시설**은 **동등하게 장애인에게 제공**되고, 그들의 욕구를 수용한다.

이 협약의 당사국은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을 통하여 지역 사회에서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며, 장애인이 이러한 권리를 완전히 향유하고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는 것이 포함된다.c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이 '선택'의 문제?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nvention recognize the equal right of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live in the community, with choices equal to others, and shall take effective and appropriate measures to facilitate full enjoyment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of this right and their full inclusion and participation in the community"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
→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가져야 할 권리

~~지역사회에서 살지 시설에서 살지 선택~~

UN CRPD 19조에 관한 일반논평 5

일반논평(General Comment)

- 일반 '권고'
- 인권 규범 조항, 특정 주제 등에 대한 위원회의 해석 및 규범 내 조항 이행의 적절한 접근 방식 제시
- UN CRPD 19조에 관한 일반논평 5: CRPD 위원회, 19조에 관한 일반논평 작성 결의(2014년)/일반 간담회(General Discussion) 개최 (2016년)/일반논평5 채택(2017년)



19조 두문(Chapeau)

19조 해석의 전제와 원칙

어떤 장애인이 **많은 양의 활동보조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특히 그 활동보조 서비스가 **"지나치게 고가"**이거나, 장애인이 거주시설 밖에서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간주**될 경우, 당사국은 **시설 수용만을 유일한 해결책**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지적 장애인, 특히 **복잡한 의사소통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들은, **시설 환경 밖에서 생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곤 한다.

이러한 논리는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에 포용될 권리를 지적 능력, 자기 관리기능, 지원 필요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에게 적용하고 있는 **19조와 상반**되는 것이다.

A. 정의 "자립생활"

자립생활의 핵심 요소

장애인이 자신의 삶에 관하여 **선택과 통제**를 수행하고 삶에 관한 모든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제공받음을 의미한다.

(중략)

(자기결정권은) **내가 누구와 어디에 사는지, 무엇을 먹는지, 몇 시에 자는지, 실내에 있을 것인지 외출할 것인지, 식탁 위에 식탁보와 초를 둘 것인지, 반려동물을 둘 것인지, 음악을 들을 것인지** 등 **개인의 정체성과 인격을 발전시키는 일**과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활동과 결정이 곧 **내가 누구인지를 구성**한다.

자립 생활은 개인의 자율성과 자유의 필수적인 한 부분이며, **꼭 홀로 사는 것 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자립생활을 **스스로** 일상의 활동을 **수행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만 해석해서도 안 된다. 오히려 자립적 생활이란 협약 3(a)조에 포함된 천부적 존엄성과 개인의 **자율성에 대한 존중**에 관련된 **선택과 통제의 자유**로 간주되어야 한다. 개인적 자율성이라는 형태로서의 자립은 장애를 가진 개인이 자신의 생활 형태와 일상 활동에 관한 선택과 통제의 기회를 빼앗기지 않음을 의미한다.

A. 정의 "자립적 주거형태"

비자립적 주거형태, 시설이란 무엇인가?

자립 생활과 지역사회 참여: 모든 유형의 **거주시설 바깥에서의 생활**

(중략) 백 명 이상이 거주하는 대규모 시설도, 5~8명이 사는 작은 그룹홈도, 심지어는 혼자 사는 집도 **시설 또는 시설화의 요소(개인의 선택과 자율성 미보장)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면 자립적 주거 형태로 볼 수 없다.**

시설의 본질적 요소: 타인과 **활동보조 제공자를 의무적으로 공유**해야 하고, 보조 제공자를 선택할 힘 이 제한적이거나 전혀 없으며, 지역사회 내 자립 생활로부터 고립 및 분리되고, **일상의 결정에 대한 통제권**을 갖지 못하며, **동거인을 선택**할 수 없고, 개인의 의지와 선호에 관계없이 **정해진 일과**를 수행해야 하며, 특정 기관에 속한 다른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서 같은 활동**을 해야 하고, **서비스 제공이 가부장적(일방적/권위적)**이며, 주거 형태가 감독의 대상이 되고, 일반적으로 같은 환경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수가 불균형

A. 정의 "자립적 주거형태"

'선택'이 제공되는 시설을 자립적 주거형태로 볼 수 있는가?

시설 환경도 장애인에 게 어느 정도의 선택과 통제를 제공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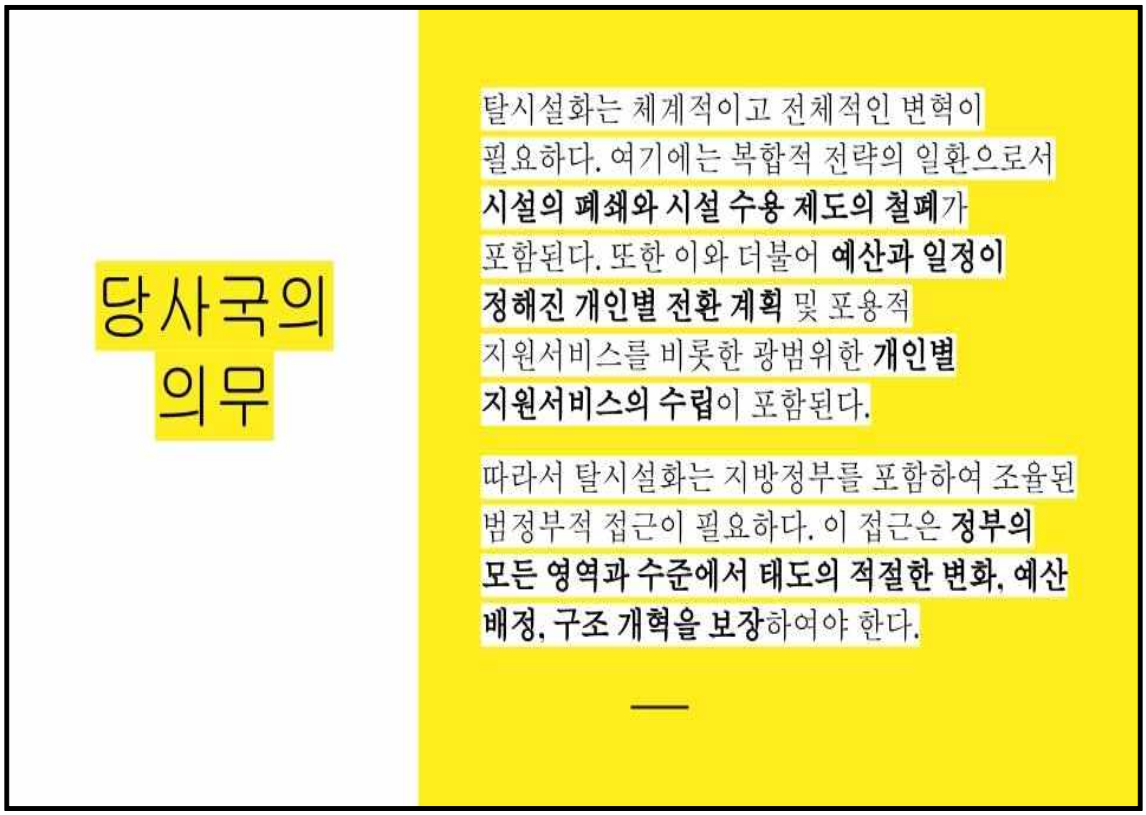
그러나 이들 **선택은 삶의 특정 영역에 국한**되며 시설의 **분리적 성격**을 바꾸지는 못한다. 따라서 탈시설 정책을 위해서는 시설 환경 폐쇄 이상의 구조 적 개혁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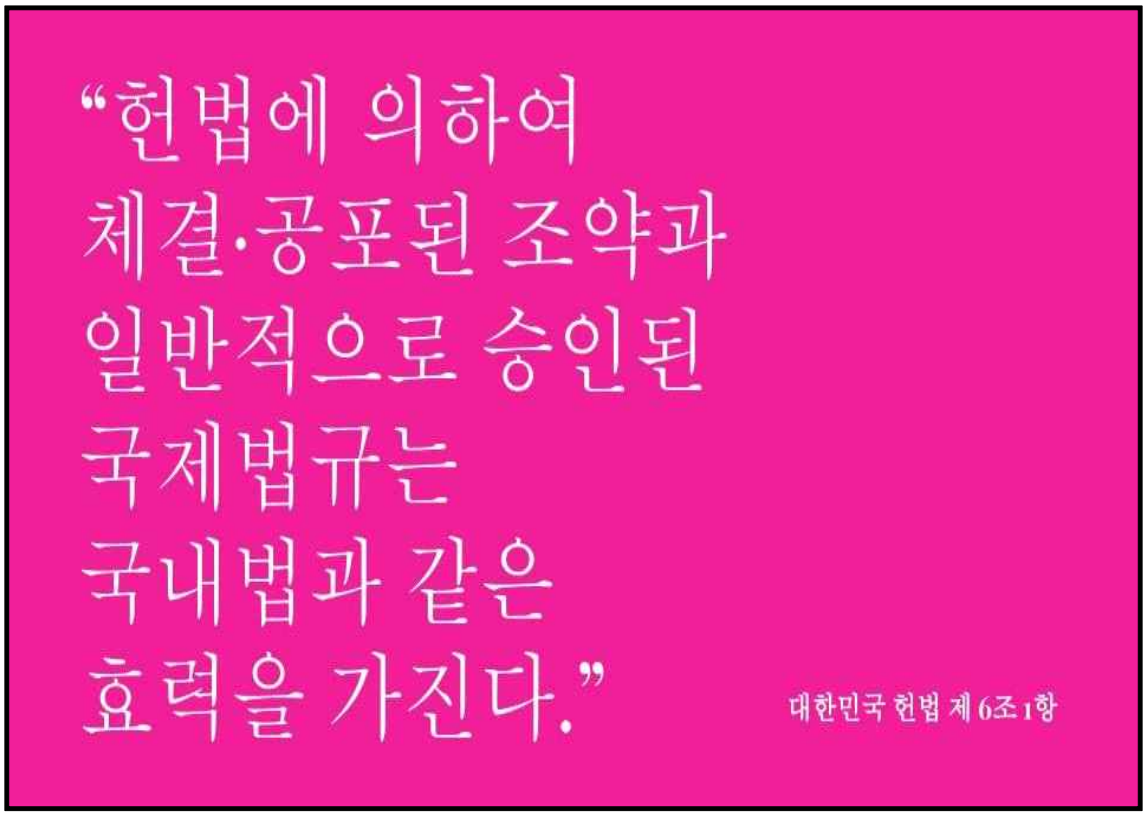
크고 작은 아동 그룹홈이 특히 위험하다. 가족과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그 무엇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족 같은" 시설도 결국은 시설**이며, 가족의 보살핌은 대체 하지 못한다.

당사국의 의무

당사국은 모든 시설 환경을 자립적 생활 지원서비스로 대체하기 위하여 **장애인 대표 단체와의 정중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적절한 일정과 자원을 갖춘 **전략적 계획**에 돌입해야 한다는 **즉각적 의무**를 가진다.

당사국이 가지는 **재량의 영역은 계획적 이행에 관련한 것이지, 대체 여부에 관련한 것이 아니다.** 당사국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완전한 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 대표 단체를 통해 장애인과 직접 협의하여 전환 계획을 개발해야 한다.


당사국의
의무
탈시설화는 체계적이고 전체적인 변혁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복합적 전략의 일환으로서
시설의 폐쇄와 시설 수용 제도의 철폐가
포함된다. 또한 이와 더불어 예산과 일정이
정해진 개인별 전환 계획 및 포용적
지원서비스를 비롯한 광범위한 개인별
지원서비스의 수립이 포함된다.
따라서 탈시설화는 지방정부를 포함하여 조율된
범정부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 접근은 정부의
모든 영역과 수준에서 태도의 적절한 변화, 예산
배정, 구조 개혁을 보장하여야 한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 6조 1항

UN CRPD 의 현현 (manifestation)

"자립생활"

(자기결정권은) 내가 누구와 어디에 사는지, 무엇을 먹는지, 몇 시에 자는지, 실내에 있을 것인지 외출할 것인지, 식탁 위에 식탁보와 초를 둘 것인지, 반려동물을 둘 것인지, 음악을 들을 것인지 등 개인의 정체성과 인격을 발전시키는 일과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활동과 결정이 곧 내가 누구인지를 구성한다.

자립적 주거형태

자립 생활과 지역사회 참여: 모든 유형의 거주시설 바깥에서의 생활

대구시립희망원 '시민마을' 폐쇄 1년 기념식

김미연 유엔장애인권리위원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제19조뿐 아니라 모든 조항에서 탈시설을 촉구하고 권고하고 있으며, 장애를 가진 존재 그 자체의 존엄을 요구하고 있다. 오늘 이곳에 모인 33명의 발달장애인 분들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 뜻하는 의미를 몸소 보여주고 있다.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것"



출처: 비마이너
http://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14002

'자립의지' 있어야 탈시설 한다고? "우리의 삶을 보라"

"민정 씨가 다른 취미는 딱히 없어요. 별로 안 좋아해 티비도. 나가서 뭐 구경하는 거, 간식 사 먹는 거, 그런 거 좋아해서 매일 나가죠. 어제도 제가 안 오는 날인데, 오늘 와서 보니까 청바지 만 원 주고 하나 샀데? 지금 입은 거 이거요. (조 씨가 입은 청바지는 바지 밑단이 풀린듯한 디테일이 들어가고, 무릎 부분이 찢어진, 요즘 유행하는 바지였다) 서문시장이나 반월당 지하상가 많이 가고. 저기 탑마트라고 큰 마트 있어요. 거기도 자주 가고. 나는 '아유, 민정 씨 너무 안 요란하나, 움직이기 편한 옷 사지' 하는데 확실히 젊은 아가씨라서 그런가 이런 옷을 좋아하더라고요. 우리야 뭐 아줌마들이니까 좀 점잖은 거 입었으면 싶지만은, 입고 싶은 거 입어야지 뭐." (조민정 씨의 활동지원사 이경희 씨)



출처: 비마이너
http://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13438

'자립의지' 있어야 탈시설 한다고? "우리의 삶을 보라"

방 한쪽 벽에 걸린 중후한 '신상' 재킷에서 눈을 돌리자 이번에는 침대 머리맡에 걸린 헤드폰이 보인다.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디자인과 색상이다. 시립희망원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마트에서 정 씨가 직접 고른 것이다. "내가 고르고, 활동지원사한테 돈 주면서 계산 좀 해달라 했지." 정 씨는 '안목이 좋다'는 말에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다.

헤드폰은 라디오를 들을 때 쓴다. 라디오는 주로 날씨를 확인하기 위해 듣는데, 정 씨는 특히 비 오는 날이 궁금하다. "비 오면 좋지. 내가 옛날에 머슴살이했다. 비 오면 농사 잘되니까 좋아요." 과연 그의 집에는 꽃이며 상추 등을 심은 화분이 눈에 띈다. 방 한쪽, 그의 눈이 닿는 곳에 열대어들이 바삐 움직이는 어항도 있다.



출처: 비마이너
http://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13438

한국장애포럼 최한별 사무국장

kdf@thekdf.org

http://thekdf.org

주제발표2

CRPD선택의정서 개인통보제도를 통해 드러난 탈시설의 당위성

스티븐 알렌 (Validity Foundation 공동대표)



발 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개인통보제도를 통해 드러난 탈시설의 당위성 : 헝가리 시설소규모화에 대한 개인진정 사례

스티븐 알렌 ‖ Validity Foundation 공동대표

오늘 이렇게 중요한 행사에 발제자로 초대해주신 분들께 부다페스트에서 인사드립니다.

제가 속한 발리더티 재단을 대표하여 한국장애인단체들의 강력한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 옹호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자립생활이 권리일 뿐만 아니라, 탈시설이 국제법에 따른 의무이기도 하다는 메시지를 저는 강력히 지지합니다.

지난해 팬데믹이 우리 모두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미친 만큼,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함께 모여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서 장애인의 집단적 거주, 모든 규모의 시설 수용을 전 세계적으로 끝내야 합니다. 실제로, 사람을 시설에 수용하는 것이 장애인의 삶과 생존 그 자체에 치명적이라는 점이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하게 증명되었습니다. 팬데믹 시기 사망과 감염 사례의 상당히 높은 비율이 시설에서 나타났다는 점을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자립생활을 할 권리, 누구와 어디서 살지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는 장애인의 존엄과 사회 통합에 핵심적인 요소이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시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팬데믹 동안 폐쇄적 공간에서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전염병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권리들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저희 단체와 유럽자립생활네트워크, 그리고 헝가리시민자유연합이 공동으로 헝가리의 장애인 집단 시설수용에 문제를 제기한 활동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활동은 헝가리가 2007년 비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따른 조사 체계를 활용한 것입니다.

Why did Validity and our partners initiate a request for an inquiry?

왜 발리더티 재단과 공동행동 단체들은 조사 요청을 했는가?

조사 결과 보고서는 3년간의 조사 끝에 지난해 4월 발표됐습니다. 저희가 진정한 내용에 관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이전에도 다양한 곳에서 헝가리 장애인들의 시설 수용의 역사에 관해 이야기 해왔는데요. 오늘은 자세한 설명을 할 시간이 없지만, 저희가 위원회에 중대하고 체계적인 협약 위반이라며 조사를 요청하면서 들었던 주요 근거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헝가리는 인구가 1천만밖에 되지 않지만 유럽에서 시설 수용률이 가장 높은 국가로, 장애인 약 85,000명이 시설에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헝가리는 거의 15년 전에 CRPD를 비준했으나, 시설 수용인 숫자는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헝가리는 탈시설 전략을 채택했지만, 1차 협약 정기 심의에서 위원회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탈시설 전략이 30년 계획인데다, 중간 평가 지표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단계별 계획이 없다는 것은 시설에서 자립생활로의 전환을 보장하겠다는 진정한 의지가 없다는 반증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국가가 자립생활은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한 과제라고 주장하고, 이러한 변화를 이뤄내기 위한 자원이 부족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헝가리의 경우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헝가리는 바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럽연합으로부터 상당한 공공 재원을 조달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요인들과 더불어 다른 요인들, 예를 들어 장애인이 계속 시설에 수용되도록 하는 후견인 제도 적용률이 굉장히 높고, 시설 내 학대와 방임, 폭력 사건이 너무나 일상적인 점 등을 고려해 우리는 선택의정서에 따른 직권 조사 제도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개인 진정 사례와 달리, 위원회는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헝가리 정부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는 조사단을 꾸려 2019년 상반기 2주간 헝가리를 방문했습니다. 이러한 조사에서는 사실관계와 수치가 중요한만큼,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위원들이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위원들은 헝가리 전국의 많은 대규모/소규모 시설들을 방문했습니다. 또한, 많은 정부 관계자, 판사,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단체들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헝가리 사례는 위원회가 역대 수행한 세 번째 조사였으며, 최종보고서는 심도있는 조사 끝에 발표되었습니다. 보고서는 헝가리가 장애인의 권리를 중대하고 체계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헝가리가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와 법률 행위의 권리의 본질을 침해하고 비차별 원칙을 광범위하고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았

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헝가리 정부가 향후 해야 할 노력에 무엇이 있는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탈시설에 관한 부분들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탈시설 전략을 세우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특히 분명한 목표와 지표가 없거나,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아 지역사회로 돌아오는 사람의 숫자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다는 증거가 없다면 말이죠.

두 번째로, 위원회는 헝가리 정부가 계속해서 시설에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여기에는 유럽연합으로부터 받는 국제 재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지역 기반 개인별 지원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자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역 내 개인별 지원체계는 시설화를 막고 지역사회의 완전한 재통합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다시 말해, 시설에 돈을 투입하는 것은 지역사회 내 필수적 서비스 자원을 탈취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 배제와 고립을 영속화시키게 됩니다.

세 번째로, 위원회는 헝가리의 탈시설 전략의 기본이 되는 탈시설 모델을 심도있게 살펴봤습니다. 간략히 설명해서, 헝가리의 탈시설 모델은 사람들을 그들의 집에서 지원하는것 보다는 그룹홈이라고 불리우는 더 작은 신규 시설 건설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헝가리에서 그룹홈에는 장애인이 최대 50인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런 세팅이 시설적 환경을 이어가는 것이자, 장애인을 지역사회에서 계속해서 단절시키고, 기존 대규모 시설의 엄격한 규율을 여전히 유지함으로써 장애인의 자율성과 사회적 통합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룹홈은 집이 아니라 시설이고, 완전한 탈시설을 달성해야 할 당사국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위원회는 탈시설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이 최우선 순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장애인권리협약 19조 및 일반논평 5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헝가리 정부는 시설 거주인들에게 탈시설을 원하는지 물어봤다고 했지만, 위원회는 대규모 시설에서 살지, 아무 지원 없이 집에서 살지, 심지어 집도 없이 살아갈지 선택하라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선택'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에게 소규모 시설을 '선택지'로 제공했는데, 소규모 시설은 환경이 조금 더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는 협약 이행이라고 볼 수 없고 어디서 누구와 살지 결정할 수 있는 선택지를 장애인에게 제공하지도 못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헝가리 정부가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역 기반 서비스를 개발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슬프게도, 헝가리 정부는 구시대적인 의료기반 돌봄 제공 패러다임 아래 시설 내 서비스 제공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정책이 중단되어야 하며 특히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은 거주 공간과 분리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탈시설 정책 구성 과정에 장애인의 실질적 참여와 관여가 없었

다는 점에 대해 위원회는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위원회는 헝가리 장애인단체가 솔직한 의견을 공개적이고 독립적으로 발표하지 못했다는 점을 확인했는데요. 많은 장애인단체가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조사 내용이 전부는 아닙니다. 위원회는 헝가리 정부가 협약 12조와 5조 역시 중대하고 체계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위원회는 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접근방식 전반에 차별이 만연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장애인차별적이고 권리박탈적인 구시대적 기조에서 탈피하는 정책 결정 구조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 역시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 정책 입안자들은 '돌봄'이나 '관리'보다는 '지원', '통합', '자율성'을 더 많이 고려하면서 정책을 만들고 서비스를 디자인해야 합니다.

현재 저희는 헝가리 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 1주년을 앞두고 있고 위원회의 조사 권고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헝가리에 상당 규모의 재정을 투입 중지하였고 현재는 지도자들간 대화를 진행하면서 향후 공공 재원이 시설 유지, 보수, 확장에 투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많은 장애인 당사자가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으며 더 높은 수준의 실질적 참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헝가리 내에서는 새로운 '그룹홈' 신설이 문제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성과 대부분은 진정한 통합, 진정한 시민권, 진정한 인권 보장이라는 궁극의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는 전세계 장애인 활동가들 덕분에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한국 장애인들이 탈시설을-그것도 수십년에 걸쳐서가 아니라 빠른 기간 안에 이뤄내기 위해 강력한 국가 법률 기반을 다지는 길을 앞장서서 열어가고 있다는 소식에 저희 모두가 굉장히 기쁘고 고무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 지금이 행동할 때가 아니라면, 대체 언제일까요?

감사합니다.

토 론

- □ 정다혜 (사단법인장애인법연구회 변호사)
- □ 박마루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 □ 김소영 (유엔인권정책센터 장애인권담당)
- □ 이인영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2과 조사관)
- □ 신용호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
- □ 종합토론



토 론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코로나19

정다혜 ‖ 사단법인장애인법연구회 변호사

1.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의 권리

우리나라가 2008년 가입 및 비준하여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이하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증진, 보호 및 보장하고, 장애인의 천부적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또한, 일반원칙으로 "천부적인 존엄성, 선택의 자유를 포함한 개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비차별",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 및 통합"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제3조), 협약 전반에서 장애인을 수혜적 대상자가 아닌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정한다.

장애인권리협약에서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조항은 제19조이다. 제19조는 모든 장애인이 '지역 사회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거주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를 가지고, '특정한 주거 형태'를 취할 것을 강요받지 아니하여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소외되거나 분리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비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지역사회 내의 서비스 및 시설은 장애인에게도 동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제19조 외에도 장애인권리협약의 여러 조항들은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뒷받침한다. 장애인권리협약 제5조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의 금지와 평등의 증진을 제시하며, 제14조는 신체의 자유의 보장을, 제22조는 사생활의 존중을 각 규정한다. 비장애인과 달리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서비스와 지원체계가 부족하며 거주시설에서의 거주 외에는 선택권이 없는 현실은 장애인의 평등권을, 시설의 구조적 한계로 인한 획일적 관리와 통제는 거주 장애인의 신체의 자유를 비롯한 자

유권을 제약한다. 또한, 시설 내에서의 집단생활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나 기호 및 욕구의 반영 역시 어렵다.[1] 앞서 언급한 협약의 조항들에서 보장하는 여러 권리들은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갈 때 비로소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전세계적 위기 속에서 시설에서의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그에 따른 (예방적) 코호트격리 등의 대응방식은 감염병 재난상황에서 시설거주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는 장애인권리협약에서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부여받은 생명권과 이를 보장하기 위한 당사국의 의무를 명시한 제10조, 자연재해와 같은 위험상황의 발생시 장애인에 대한 보호 및 안전 보장을 규정한 제11조가 장애인의 탈시설을 뒷받침하는 근거로서 더욱 주목받는 계기가 되었다.

2. 코로나19와 집단시설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 6. 4.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사망자 273명의 절반 이상인 150명(54.9%)은 병원이나 시설 등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었다.[2] 2021. 2. 10. 기준으로는 국내 코로나19 사망자 1,486명 중 요양원, 사회복지시설을 비롯한 집단거주시설에서의 사망자는 777명(52.3%)에 달했다.[3]

집단거주시설에서의 집단감염 역시 꾸준히 발생했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밀알사랑의 집, 라파엘의 집, 아름다운 누리와 지적장애인시설인 신아재활원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였다.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한 장애인거주시설은 총 20곳인데 이 중 85%에 달하는 17곳은 30인 이상의 대규모 시설이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거주시설 코로나19 확진통계에 따르면, 2021. 2. 25. 기준으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장애인은 총 177명이다.[4] 단기보호시설과 공동생활 가정을 제외한 장애인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우, 2021. 2. 26. 기준으로 코로나19 감염률은 1천명당 약 7.08명으로 추산되었으며 이는 전체인구의 감염률인 1천명당 약 1.71명보다 4.1배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

1) 국가인권위원회의 2017년 「중증·정신장애인 시설생활인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목욕시 타인에게 노출되는 경우가 58.3%, 식사와 간식 선택제한으로 인해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없는 경우가 50.4%, 본인이 원할 때 식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77.7%로 나타났다.
2) 연합뉴스, “국내 코로나19 치명률 2.35%…사망자 절반은 병원·시설서 감염” (2020. 6. 4.)
3) 더인디고, “코로나 사망자 52.3% 요양·집단거주시설… ‘긴급탈시설’ 법으로 못 박아야” (2021. 2. 25.)
4) 에이블뉴스, “‘코로나19’ 거주시설 장애인 177명 확진” (20211. 3. 3.)

해외의 경우에도 집단시설이 코로나19에 더욱 취약했다. 장애인거주시설이나 요양시설을 비롯한 집단시설의 사망자 비율이 전체 사망자 중 상당비율을 차지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 4. 기준으로 스페인, 프랑스, 아일랜드, 벨기에 등 5개국의 코로나19 사망자 중 42~57%가 집단시설에서 발생하였으며,[5] 미국은 2020. 11. 기준으로 코로나19 사망자 중 30%이상이 요양시설에서 발생하였다.[6]

국내·외를 불문하고 집단시설에서 높은 코로나19 감염률과 사망률이 나타나는 것은 시설의 구조 및 환경적 특성과 한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거주시설을 비롯한 집단시설은 대체로 다수의 인원이 좁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는 구조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17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시설의 경우 1개 숙소에 3명 내지 5명이 거주하고 있는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52.4%,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1개 숙소에 6명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비율이 62.8%에 달했다.[7] 또한, 대부분의 시설은 개개인의 숙소 외에도 식당, 화장실이 공용공간으로 설계되어 있고, 식사를 비롯한 일상생활이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집단적으로 이루어진다. 이처럼 집단시설은 다수가 한정된 공간을 공유하는 밀집성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시설에서는 1건의 감염이 집단감염으로 확대 및 재생산되기 용이하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있어서 매우 취약할 수 밖에 없다.

장애인거주시설을 비롯한 집단시설에 대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책은 크게 3가지로 1)코로나19감염이 발생한 경우 코호트 격리를 시행, 2)감염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이더라도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권고 및 시행, 3)무기한 면회 및 외출금지 등의 조치 시행이었다. 청도대남병원, 신아재활원 등 코로나19가 발생한 시설에 대하여 코호트 격리가 지속된 바 있다. 경기도에서는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1,824개의 시설에 대하여 2020년 3월 시설장 재량의 예방적 코호트 격리 시행을 공식 권고하였으며, 경상북도는 사회복지시설 573개소에 대하여 강제조치로서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시행하였다.[8]

집단시설에 대하여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지속하는 정부의 이러한 대응은 감염병에 취약한 시설의 구조적 한계를 간과한 것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코호트격리란 1인실 격리를 우선하여 시행함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격리 대상인 환자가 많은

5) 연합뉴스, "'코로나19 심각' 유럽 각국, 사망자 절반이 요양원서 쏟아져" (2020. 4. 14.)
6) YTN, "美 요양원 코로나19 직격탄...사망자의 30% 이상 차지" (2020. 11.)
7) 국가인권위원회, 「중증·정신장애인 시설생활인에 대한 실태조사」 2017
8) 장애인법연구회, 「코로나19와 장애」 2020

경우 일정한 원칙(원인균, 환자의 상태 및 발생규모, 병실의 구조 등을 고려)에 따라 비슷한 조건의 환자들을 한 병실 또는 한 공간에서 격리하는 것인데, 이 조치가 안전하고 유의미한 조치가 되기 위해서는 각 격리공간이 분리 및 독립이 보장되어야 하고, 코로나19 감염자와 비감염자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하지만, 대다수의 시설에서는 생활동선과 영역이 명확히 분리하는 것이 어렵고 생활공간을 공유하는 환경적 특성상 코로나19감염자와 잠재적 비감염자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 또한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정부의 집단시설에 대한 코호트 격리는 오히려 시설 내에서 코로나19 감염의 폭발적인 재생산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일례로, 신아재활원 등에서는 코호트격리조치가 이루어지는 동안 코로나19 감염자수가 증가하였고, 장애단체들은 코호트격리가 아닌 긴급분산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으며, 이에 대한 유엔진정을 제기하였다.[9)10)]

3. 나아가야할 길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취약한 시설거주 장애인에게 대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장애인이 감염병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코로나19는 장애인협약에서 보장하는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제19조) 뿐 아니라 장애인의 생명권의 보장(제10조)과 감염병 재난과 같은 위험상황에서 장애인을 보호하고 안정을 보장해야하는 당사국의 의무(제11조)적 측면에서도 탈시설이 얼마나 긴급하고도 중요하게 추진되어야 하는 지를 일깨워 주고 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지난 2020년 8월 제23차 회의에서 '탈시설 워킹그룹'을 구성한 것 역시 이와 동일한 문제의식에 기초한다. 따라서 지난 해 12월 발의된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반드시 제정되어야 하는 법률임과 동시에 앞으로 또 다시 찾아올 감염병 재난사태에서 장애인의 기본적인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가장 확실한 대응방안이다. 장애인권리협약에 가입한지 10년이 훌쩍 흐른 지금, 정부는 더 이상 장애인의 탈시설할 권리를 외면하여서는 안된다.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장애인권리협약과 발맞춘 적극적인 탈시설 정책의 추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히 요구된다.

9) 오마이뉴스,"4일만에 확진자 58명 증가, 코호트 격리 장애인 시설에 재앙" (2020. 12. 30.)
10) 더인디고, "신아원 코호트 격리, 장애계 '유엔 진정'" (2021. 1. 4.)

토 론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선택의정서 비준과 실효적 이행

박마루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오늘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탈시설권리, 국제적 국내적 실천방안 모색 토론회 발제를 보면서 선택의정서 비준이 왜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는지 왜 이제까지 국회 비준이 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좋은 토론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 12월 UN장애인권리협약을 국회에서 비준하고 이듬해인 2009년 1월부터 발효함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협약 비준 당시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상법 제732조와 협약 제25조 건강 (e)항이 충돌한다는 이유로 비준을 유보하였고, 또한 개인진정제도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직권조사권에 대한 부담 등을 이유로 선택의정서 비준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 등 주요 국제인권협약문의 경우 개인진정을 포함한 선택의정서를 비준한 상태이기 때문에 장애인권리협약(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대해서 비준을 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권리 실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비판이 지금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CRPD는 164개국이 서명하고 181개국이 비준했으며 그 중 94개국이 선택의정서에 서명하고 96개국이 비준에 참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11년째 논의만 되고 있다.

2011년 6월 우리나라는 첫 번째 정부보고서를 제출하고 2014년 9월 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다. 당시 한국이 심의를 통해 받은 최종견해는 3개 부문에서 66개 항의 우려 및 권고사항에 대한 의견이 서술됐고, 선택의정서에 대한 비준이 권고되었다. 2019년 3월 한국 정부는 제2,3차 국가보고서를 통해 선택의정서의 비준을 약속하였으나 앞에서 말한 협약의 본문 제 25조의 e항과 선택의정서에 대한 비준이 유보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선택의정서를 채택하지 않음에 따라 장애인 권리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이 협약에 따른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했을 경우 한국의 장애인은 유엔의 장애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없고, 진정을 한다 해도 조사단이 한국을 방

문하여 조사하고 미준수나 권리침해에 대해 시정 권고할 수 없다. 먼저 개인진정제도는 당사국의 장애인이 권리침해를 당해 국내의 모든 법적, 행정적 절차를 거쳤음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 유엔에 진정하게 되면 해당위원회는 당사자의 주장을 심리하여 해당국가의 국제인권조약 위반 여부를 결정하고, 당사국에게 진정인을 위한 배상 및 재발방지 등의 적절한 조치와 심리의 대상이 되었던 국내법령에 대한 개정을 권고하는 제도이고, 직권조사는 진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인지했을 경우 위원회가 인권침해가 있는 나라에 가서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직권조사 제도는 당사국의 협조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한 당사국의 국내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선택의정서 비준을 위해 2014년 10월, 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 권고가 있었지만, 강제력이 없었고 당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현재까지 선택의정서는 비준되지 못하고 있다. 선택의정서를 비준하고, 그에 따른 개인진정과 직권조사의 길이 열린 다는 것은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권익 보호와 확대에 있어, 전환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에 2020년 9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는 CRPD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및 선제적 실효방안 마련을 위한 국제포럼 국내세미나 통해서 개인진정결정 이행 방안 추진하였다.



■ 사 업 명 : CRPD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및 선제적 실효방안 마련을 위한 국제포럼 국내세미나 - 개인진정결정 이행 방안
■ 일　　시 : 2020. 9. 24. (목) 14:00 ~ 17:00
■ 장　　소 : 복지TV 스튜디오
■ 참 가 자
　가. 발　제 : 신혜수(유엔인권센터 이사장), 이양희(국제아동인권센터 대표)
　나. 사　회 : 조성민(더인디고 대표)
　다. 토　론 : UN CRPD NGO연대, 국가인권위원회, 보건복지부, 법무부

- 공동주최 : 국회의원 이상민, 김민석, 최혜영, 이종성, 김예지, UN CRPD NGO연대, 국회 약자의 눈 포럼
- 주　　관: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 후　　원: 복지부, 외교부, 법무부,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여성차별철폐협약(선택의정서 비준 성공 사례), 아동권리협약(선택의정서 비준 활동 중인 사례)의 선택의정서 비준 활동 및 성과, 실제 활용 사례와 이에 대한 성과 공유를 통한 CRPD 선택의정서 비준의 필요성을 상기시키고, 복지부,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단체, 국회의원 등 선택의정서 비준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들로 하여금 비준을 위한 구체적 전략을 수립의 필요성을 현실화시키고자 장애계가 연대하여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를 위한 장애계의 지속적 관심과 공동 행동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선택의정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인권을 기반으로 하여 차별받은 당사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데 있다. 또한 UN장애인권리협약의 선택의정서가 비준된다고 해도 UN의 권고를 우리나라가 단순히 권고로만 받아들이고 이를 이행하는 데 책임감을 갖지 않는다면 그 어떠한 권리 구제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 UN의 결정을 실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고 또한 국내 법원의 인식 변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오늘 토론회 발제와 관련하여 탈시설과 관련하여 신체 자유 및 안전(제14종)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 대우 또는 처벌로부터의 자유(제15조), 착취, 폭력, 학대로부터의 자유(제16조),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제19조)를 통하여 탈시설화 전략의 실효성 부족과 장애인을 공동체에 포함시키는 조치의 부족, 모든 필수적인 지원서비스 정책 부족을 우려하고 있는 것에 저 역시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 인권모델에 기반한 탈시설화 전략과 서비스 마련을 촉구하는 것은 당연하고 동의합니다.

국회에서도 김예지의원이 74명의 국회의원 서명을 받아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촉구결의안을 발의 했듯이 오늘 진행되고 있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탈시설권리가 국제적 국내적으로 실천 방안이 모색 되도록 저 역시 노력하겠습니다.

토 론

국제인권조약에서 본 탈시설

김소영 ‖ 유엔인권정책센터 장애인권담당

국제인권조약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자유권)	1990.4.10.
- 제1선택의정서(개인진정)	1990.4.10.
- 제2선택의정서(사형제폐지)	미가입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사회권규약)	1990.4.10.
- 선택의정서	미가입
인종차별철폐협약	1978.12.5.
여성차별철폐협약	1984.12.27.
- 선택의정서	2006.10.18
고문방지협약	1995.1.9
- 선택의정서	미가입
아동권리협약	1991.11.20
- 제1선택의정서(아동의 무력 충돌 참여)	2004.9.24
- 제2선택의정서(아동매매·성매매·움란물)	2004.9.24
- 제3선택의정서(개인진정)	미가입
장애인권리협약	2008.12.11
- 선택의정서	미가입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미가입
강제실종협약	미가입

(주요국제인권협약, 외교부 홈페이지 참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자유권)규약과 탈시설-자립생활

제9조
1.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되지 아니한다 어느 누구도 법률로 정한 이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일반논평) 8호: 제9조 신체의 자유 및 안전
본위원회는 **제9조1항이 형사사건 뿐만아니라 정신질환, 부랑, 약물중독 교육적 목적, 출입국 관리 등의 자유를 박탈하는 모든 경우에 적용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 자유권규약 제9조 1항은 모든 사람의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천명하고 있음. 제9조를 설명하는 일반논평은 규약의 제9조가 형사사건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님을 지적함. 즉, 장애를 이유로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박탈해서는 안됨을 규정함

제17조
1.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불법적인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
2.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 또는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일반논평) 제17조는 모든 사람이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불법적인 비난을 받지 아니할 것을 규정한다. 본 위원회는 이 권리가 국가 당국에 의한 것이건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한 것이건, 모든 간섭 및 비난으로부터 보장되어야 한다고 본다. **동 조항은 당사국에 그러한 간섭** 및 비난을 **금지하고 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및 기타 조치를 채택할 의무를 부과한다.**

=> 자유권 규약 제17조는 사생활과 가정, 주거에 대해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함을 명시함. 원하는 조건의 주거, 사생활이 보장되는 삶을 살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또한 일반논평을 통해 사생활, 가정, 주거에 대한 간섭을 국가에서 금지해야 하며, 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제23조
1.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며 기초적인 단위이고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혼인적령의 남녀가 혼인을 하고 가정을 구성할 권리**가 인정된다

(일반논평) 23조 5. '가정을 구성할 권리'는 원칙적으로, 자녀를 출산하고 함께 살 가능성을 내포한다. 당사국이 가족계획 정책을 채택한 경우, 그 정책은 동 규약과 부합해야 하고, 특히, 차별적이거나 강제적이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함께 살 가능성'은 특히, **정치, 경제적 혹은 기타 비슷한 이유들로 인해 가족 구성원들이 떨어져 있는 경우**, **국내 차원에서 그리고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여 가족의 화합이나 재결합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 제23조는 혼인 적령기의 사람은 원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룰 권리가 있음을 천명함. 일반논평에서는 여러 이유로 가정구성원이 떨어져 살고 있을 경우 이를 재결합하기 위해 국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즉, 모든 사람은 누구와 함께 살지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가정과 함께 살 수 있도록 국가가 보호해야 함을 의미함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사회권)규약과 탈시설-자립생활

제11조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적당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 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그러한 취지에서 자유로운 동의에 입각한 국제적 협력의 본질적인 중요성을 인정하고 그 권리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한다.

일반논평 4호 (1991):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 (규약 제11조 1항)*
1.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하 규약) 제11조 1항에 따라 당사국은 "적당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 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당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 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모든 사람의 권리"를 인정한다. 적당한 생활수준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에서 파생된 **적절한 주거에 대한 인간의 권리는 모든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누리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7. 위원회의 견해로는 **주거권**을 … **안전하며 평화롭고 존엄하게 살 권리로 해석해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두 가지 이유에서 후자가 적절한 해석이라고 보고 있다. 첫 번째로, 주거권은 다른 인권과 불가분하게 연계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규약이 전제로 하고 있는 기본 원칙과도 관계가 있다. … "적절한 주거란…. **적절한 사생활, 적절한 공간, 적절한 안전, 적절한 조명과 통풍, 적절한 기본적 인프라, 직장과 기본시설 이용에 대한 적절한 위치 등을 의미하여, 이 모두가 합리적인 비용**으로 보장되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 사회권 규약의 제11조는 모든 사람의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 일반논평은 적절한 주거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누리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함. 이어서 적절한 주거권은 안전하고 평화롭고 존엄하게 살 권리이며, 적절한 사생활, 적절한 공간, 적절한 안전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이미 수많은 사례(사생활 침해 잦고, 개인의 공간 없으며, 학대 폭력 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함)를 통해 우리는 시설이 사회권규약과 일반논평에서 규정하는 '적절한 주거'의 조건과 굉장히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일반논평 5호 (1994): 장애인
E. 제11조: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33. 장애인에게 적절한 식량, 접근성을 갖춘 주거, 기타 기본적인 물질적 필요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할 필요성과 더불어 "보조 장치를 포함해서 지원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장애인이 스스로 일상생활에서의 자립수준을 제고하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 마찬가지로 **일반논평4 (제6차 회기, 1991)의 8항에서 위원회가 지적한바와 같이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는 장애인의 접근성이 가능한 주거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 적절한 사생활, 적절한 공간, 적절한 안전 등을 갖춘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가 장애인에게 역시 보장되어야 함을 재확인

아동권리협약과 탈시설-자립생활

제 23조
1. 당사국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아동이 존엄성이 보장되고 자립이 촉진되며 적극적 사회참여가 조장되는 여건** 속에서 **충분히 품위있는 생활**을 누려야 함을 인정한다.

일반논평 9호(2006) 장애아동의 권리
11. 제23조 1항은 장애아동과 관련하여 협약을 이행할 때 지도적 원칙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장애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당사국이 취하는 조치들은 이 목표를 지향해야 한다. **이 조항의 핵심적 메시지는 장애아동이 사회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2. **장애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절차에서 피청취권을 가져야 하며, 자신의 발전하는 능력에 걸맞은 정도만큼 자신의 견해를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한다.

34. ... **사생활권, 고문 또는 여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 불법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는 장애아동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위해 존중・보호・증진되어야 할 보편적인 시민적 권리와 자유**이다. ...

41. **장애아동은 자신의 가정환경 내에서 가장 잘 보살펴지고 양육**된다. 단,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의 가족이 모든 측면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 아동권리협약 제23조는 장애아동의 사회참여,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참여 강조함. 또한 장애아동에 대한 일반논평 제9호에서 장애아동의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은 권리, 가정환경에서 양육되어야 할 권리 등을 명시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시설에 있지 않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

일반논평 9호(2006) 장애아동의 권리
D. 시설
47. 위원회는 시설에 수용된 장애아동의 숫자가 매우 많다는 사실, 그리고 많은 나라에서 시설수용이 아동의 위탁 방법으로 선호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자주 우려를 표명했다. 보살핌의 목적이 교육이든 치료이든 재활이든, 시설에서 제공되는 보살핌의 질적 수준은 공인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또는 있더라도 그 기준이 준수・감시되지 않기 때문에, 장애아동의 보살핌에 필요한 기준에 크게 미달하기 일쑤이다. 시설은 또한 장애아동이 정신적, 신체적, 성적 또는 여타 형태의 학대, 그리고 방치와 박대에 더 취약한 특별한 장소이기도 하다. 따라서 위원회는 당사국이 **극히 필요한 경우에 한 해, 그리고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마지막 수단으로서만 시설위탁 방법을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또한 시설위탁이 단지 아동의 자유, 특히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할 것을 권고한다. 아울러 당사국은 기존의 시설, 특히 아동의 권리 및 요구와 관련하여 설치된 소규모 주거용 보살핌 시설의 변혁, 그리고 시설에서의 보살핌을 위한 국가적 기준의 개발 및 그 기준의 효과적인 준수를 보장하는 엄격한 심사·감시 절차의 수립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48. 위원회는 분리·위탁과정에서 장애아동이 피청취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일반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은 파트너로서의 아동에게 충분한 비중을 두고 있지 않다. 심지어 결정사항이 아동의 생활과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서조차 그러하다. **따라서 위원회는 당사국이 장애아동의 견해를 고려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가정외(外) 보살핌을 위한 평가·분리·위탁과정 및 일시적 대기 과정에서 장애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일들에 장애아동의 참여를 촉진할 것을 권고**한다. …

=> 단, 같은 일반논평 제 9호 장애아동에서는 시설위탁을 최후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논의가 필요한 대목임. 위와 같이 시설위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이유가, 보호받아야 할 '아동'이라는 특성때문이지 '장애'라는 특성에서 기인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물론 아동권리위원회는 시설위탁을 할 때도 제한적으로 시설위탁을 하는 경우에도 모든 과정에서 아동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할것이며 국가 가이드라인 개발, 모니터링 등을 특별히 언급하며 시설의 인권침해 요소를 매우 우려하고 있음. 하지만 여전히 장애의 탈시설을 정당화 하는 도구로 사용 될 수 있음

○ 이상의 내용들이 시설이라는 것이 장애를 이유로 분리하고, 자유와 선택권을 박탈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인권침해적임을 뒷받침하고 있음. 그리고 시설이 학대, 폭력, 착취 등의 사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임을 인정한다는 것도 파악할 수 있음

고문방지협약 및 강제실종협약과 시설 인권 침해

고문방지협약과 강제실종협약에서도 시설화와 연결지어 생각할 요소가 많음. 시설이나 정신병원 등 장애인당사자를 대상으로 자행되는 여러 굴욕적이고 비인권적인 행위들 고문방지협약에 정의하는 고문에 해당 되므로 협약과 맞닿아 있음.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비준되지 않은 강제실종협약과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생존자와 활동가들이 강제실종협약 비준 촉구 활동을 계속하고 있음

결론-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탈시설-자립생활

○ 시설수용, 거의 모든 국제인권조약에 위반

- 거의 모든 인권조약에서 장애를 이유로 자유와 주거 선택권을 박탈하고 사회와 분리하는 시설수용을 인권 침해로 규정하고 있음. 시설수용은 명백한 국제인권조약 위반임

○ 탈시설의 정의, 끊임없이 되짚어야

-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탈시설 지역 컨설테이션 안내문에 시설화(institutionalization)를 설명하고 있는데,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주거를 이동했다고 해도, 방에만 갇혀있거나, 특수학교, 특수반 등으로 분리되는 형태도 시설화로 간주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꽃동네나 영국의 캠프힐 같은 장애인을 분리한 마을 역시 시설로 간주함.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제24차 심의에서 에스토니아를 상대로 family type, home like, village 등 장애인을 분리하고 있는 형태를 모두 폐지할 것을 최종견해에 담아 권고 한 바 있음. 즉,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사회, 환경적으로 분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탈시설의 기본 전제 중 하나임

-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 국회에서 발된 탈시설지원법에서 탈시설은 '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개인별 주택에서 자립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음. 그런데 탈시설지원법에서 규정한 '통합'의 개념이 지역사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분리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에 고민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역사회의 정의, 즉 장애인들만이 모여 사는 공동체마을은 지역사회인가 하는 문제들도 선제적으로 고민하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그러므로 국제인권조약에서 기준의 탈시설에 대한 검토는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함. 탈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개선하는 방식으로 정의를 짚어가는 자세가 필요함. 또한 이 모든 과정에 장애인단체, 당사자들의 의미있는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

○ 장애아동, 탈시설의 대상인가?

-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아동권리협약은 시설위탁을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논의가 필요함. 국내에서는 탈시설 진전 과정에서 장애아동이 어떻게 고려되고 있는지 궁금. 아동권리협약과 장애인권리협약에서의 아동의 시설거주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 필요. 성인위주의 탈시설 정책과 탈시설 운동은, 자칫 장애아동의 삶을 시설위탁 보호의 틀 안에 가두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

토 론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마련 권고

이인영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2과 조사관

인권위, “정부는 장애인이 자립하여 살 수 있도록 정책 주도해야” [11]

- 국무총리에 범정부·민간 참여하는 '장애인 탈시설 추진단' 구성과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마련 권고 -

- 전국 7개 권역별 "장애인 탈시설 정책토론회" 개최(9.25~10.25)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국무총리에게 장애인이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 수 있도록 범정부·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장애인 탈시설 추진단’을 구성하고, 탈시설 정책방향과 목표, 추진일정 및 예산 등을 포함한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 우리나라 장애인거주시설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9년 1,019개소에서 2017년 1,517개소로, 거주시설 장애인의 수는 2009년 23,243명에서 2017년 30,693명으로 증가해왔다. 연령별로는 20~30대 장애인이 전체 인원의 약 50%, 10대도 약 1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 2015년 기준 정신요양시설에 9,990명, 노숙인 시설에 4,089명 거주 등 대략 44,700명의 장애인이 거주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 2017년 인권위가 실시한 ‘중증·정신장애인 시설생활인에 대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거주시설의 비자발적 입소비율 67%, 입소 기간 10년 이상 58%로 조사됐는데, 비자발적 입소 사유는 ‘가족들이 나를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가 44.4%로 가장 높았으며, 정신요양원의 경우 10년 이상의 장기입소자가 65%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장애인거주시설은 1개 방에 ‘3~5명’이 함께 거주하는 비율이 52.4%, ‘6명 이

11)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 배포일시: 2019. 9. 23. | 보도일시: 2019. 9. 23.

상’이 함께 거주하는 비율은 36.1%로 높게 나타났는데, 거주시설의 장애인은 ‘다른 사람이 안 보는 곳에서 옷을 갈아입을 수 없다’ 38.3%, ‘자신이 원할 때 자유롭게 목욕하기 어렵다’ 34.8%, ‘기상과 취침 시간을 결정할 수 없다’ 55.0%, ‘식사시간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 75.4%가 응답했는데, 정신요양시설의 생활은 이 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별첨 결정문 참조)

○ 인권위는 거주시설의 장애인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분리된 이후 10~20년 심지어 사망 시까지 살고 있으며, 사생활이 전혀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며, 자신의 삶을 자신이 통제할 수 없고, 다양한 삶의 기회와 선택권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 또한 일부 사회복지법인들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학대, 노동착취, 비리 등의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1987년 형제복지원 사건 이후, 1990년대 소쩍새 마을(1994)부터 최근 남원평화의집(2016), 대구시립희망원(2016) 사례 등이 반복돼왔지만 국가와 사회는 거주시설의 장애인이 처한 인권침해적 상황이나 장애인 개개인의 성장과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 대해 고민하거나 대책 마련에 소홀해왔다.

○ 인권위는 정부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계획’ 등 탈시설을 위해 노력하고는 있으나,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탈시설 정책을 견인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 우리나라는 2014년 10월 3일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로부터 ‘효과적인 탈시설 전략을 개발할 것’을 권고받은 바 있으며, 2013년 4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정신건강 케어에 대해 ‘장기입원방식의 시설화 모델에서 지역사회 치료 모델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 이와 함께 인권위는 2019년 9월 25일 ~ 10월 25일 기간 동안 대구광역시를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걸쳐 전국 7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장애인인권단체와 함께 “장애인 탈시설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번 정책토론회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평가하고 장애인 탈시설 추진과정에서의 쟁점을 중심으로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시설 종사자, 장애인 인권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탈시설 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한다.

토 론

CRPD에 기반 탈시설권리 실행을 위한 정책 방향

신용호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종 합 토 론

온라인 참가자 질의 응답

부 록

□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68인)

□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결정문
: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마련을 위한 정책권고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최혜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331

발의연월일 : 2020. 12. 10.

발 의 자 : 최혜영·송영길·고영인
임종성·양경숙·윤재갑
홍기원·정춘숙·윤호중
전혜숙·인재근·홍익표
이재정·김승원·서삼석
조승래·정필모·김승남
홍영표·박홍근·강민정
노웅래·김수홍·서동용
이광재·권인숙·이탄희
김성주·이용선·윤영덕
진선미·장혜영·이은주
허종식·류호정·위성곤
이용빈·배진교·홍성국
용혜인·민병덕·정일영
이상헌·심상정·도종환
박 정·유동수·정태호
윤준병·남인순·권칠승
양향자·강은미·서영교
오영환·강병원·양이원영
서영석·양정숙·김민석
박영순·이규민·강선우

장경태・김상희・임오경
이수진・박완주 의원
(68인)

제안이유

2017년 기준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은 1,517개소이고,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 중인 장애인은 30,693명에 달하였음.

장애인에 대한 시설보호는 장애인을 지역사회로부터 분리된 채 획일화되고 집단적인 생활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고, 상당수의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등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일부 국가는 장애인의 탈시설화를 추진하여 왔으나,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탈시설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장애인이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탈시설을 지원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등을 축소・폐쇄하며, 인권침해시설을 조사하여 제재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모든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서 살

아가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생활시설의 인권 침해 실태를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를 발견하며, 인권침해가 발생한 장애인 생활시설과 그 운영법인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이바지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탈시설을 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개인별 주택에서 자립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탈시설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장애인 탈시설지원위원회를 둠(안 제8조 및 제9조).

라. 장애인의 탈시설 지원을 위하여 중앙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와 지역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함(안 제13조 및 제14조).

마. 장애인 등은 탈시설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탈시설에 대한 욕구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탈시설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의 수립을 지역탈시설지원센터의 장에게 의뢰함(안 제17조, 제20조 및 제22조).

바. 탈시설 장애인에 대하여 초기정착 지원,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제공 및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제공함(안 제25조 및 제26조).

사. 장애인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10년 이내에 폐쇄하고, 입소정원을 축소하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함(안 제32조).

아. 시설조사소위원회의 장애인 생활시설 내 인권침해 조사, 인권침해시설에 대한 조치 및 인권침해 시설 거주 장애인의 보호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3조부터 제50조까지).

법률 제 호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생활시설의 인권침해 실태를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를 발견하며, 인권침해가 발생한 장애인 생활시설과 그 운영법인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다양한 사회적 장벽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감각적인 손상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생활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

시설

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다. 그 밖에 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인권침해시설”이란 제2호에 따른 장애인 생활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생활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 생활시설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가 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체벌, 폭행, 학대, 유기 등 인권침해 행위를 하였거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저지른 경우 그 장애인 생활시설

나.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 간의 폭행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나 성범죄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장애인 생활시설

다.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시설기준에 현저하게 미달하여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 생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

애인 생활시설

라.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장애인 생활시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생활시설

1)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을 격리하거나 감금하는 장애인 생활시설

2)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의 통신, 면회, 외출, 외박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장애인 생활시설

3)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을 통제할 목적으로 거주하는 장애인 간 감시·감독을 하도록 하는 장애인 생활시설

4) 관련 법령에 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장애인 생활시설

5)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에 따른 진정,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에 따른 신고, 그 밖에 관계 행정청 및 수사기관, 시민단체에 시설에 대한 신고 등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인 생활시설

6)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 소유의 금품, 장애인의 임금 또는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

품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하는 장애인 생활시설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생활시설

4. “운영법인”이란 장애인 생활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의료법인을 말한다.

5. “탈시설”이란 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개인별 주택에서 자립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모든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 및 유형, 자산의 정도 등과 관계없이 지역사회에서 보편적이고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모든 장애인은 제약이 최소화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장애인 개인의 다양한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것이어야 하며, 장애인이 가진 정당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4조(장애인의 권리) ① 장애인은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가 있다.

②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거주지, 주거형태 및 동거인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③ 장애인은 자신의 거주지, 주거형태 및 동거인 선택을 포함한 삶의 방식에 관하여 스스로의 이해를 기반으로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⑤ 장애인은 비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와 시설을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다.

⑥ 장애인은 자신의 지역사회 정착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자기의 견해와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

제5조(자기결정권의 보장) ① 모든 장애인은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참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주거지,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나 거부, 타인과의 교류, 복지서비스의 이용 여부와 서비스 종류 등을 스스로 결정한다.

② 누구든지 지역사회 정착 및 참여에 관한 장애인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의 의사결정능력을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정착 및 참여에 관하여 의사결정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자는 장애인 당사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탈시설하는 장애인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 지원 체계를 갖추고 발전시킬 책임을 지며,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서비스의 다양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생활시설을 단계적으로 축소 및 폐쇄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탈시설 정책의 결정·시행과정에 있어 장애인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장애인 보호자 등의 책무)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는 장애인이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참여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보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장애인 탈시설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장애인 탈시설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탈시설하는 장애인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2. 탈시설 장애인 실태 및 지역사회 자원 확보에 관한 사항
3. 탈시설하는 장애인의 주거·소득·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생활시설의 단계적 축소 및 폐쇄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생활시설의 인권침해 조사 및 인권침해시설 제재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의 탈시설 지원에 관한 관련 부처의 협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장애인의 탈시설 지원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장애인 탈시설지원위원회) ① 장애인의 탈시설을 위한 지원정책의 수립과 이행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장애인 탈시설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장애인의 탈시설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장애인 탈시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탈시설하는 장애인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탈시설하는 장애인의 주거・소득・활동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생활시설의 단계적 축소 및 폐쇄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생활시설의 인권침해 조사 및 인권침해시설 제재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의 탈시설에 관한 관련 부처의 협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장애인의 탈시설 지원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직원의 출석・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2항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기관 사이의 협조 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⑥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세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⑦ 위원회와 실무위원회 및 사무기구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무조정실장
2. 장애인단체 또는 학계 등에 종사하는 사람 등 장애인 탈시설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제2항제2호에 따라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 중 5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제11조(탈시설에 관한 정보의 작성 및 배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탈시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 정책 및 지원 등 중요한 정보를 장애인이 이해하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작성 및 배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장애인의 탈시설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인권침해시설의 폐쇄 및 해당 시설 운영법인의 해산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③ 「행정조사기본법」 제9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은 이 법에 따른 시설조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장 장애인의 탈시설 지원

제1절 장애인 탈시설 지원기관 등

제13조(중앙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국가는 장애인의 탈시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이하 “중앙탈시설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중앙탈시설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의 탈시설 준비·전환·지역사회 정착의 전 과정 업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역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3. 장애인 탈시설과 관련한 연구 및 홍보
4. 장애인 탈시설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연수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국가는 중앙탈시설지원센터의 운영을 장애인 탈시설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중앙탈시설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제3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지역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역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이하 “지역탈시설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탈시설 준비・전환・정착 과정 지원

2. 제29조에 따른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탈시설 상황 평가

3. 장애인 탈시설 관련 상담・교육 및 제19조제2항에 따른 단기체험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지역탈시설지원센터에는 장애인의 탈시설 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전담인력(이하 “센터 전담인력”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지역탈시설지원센터의 운영을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지역탈시설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제3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초기상담 및 정보제공) ① 센터 전담인력은 관할 장애인 생활시설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탈시설 준비에 관한 상담 및 정보 제공을 하여야 한다.

② 센터 전담인력은 관할 장애인 생활시설에 상시적으로 방문하여 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탈시설에 관한 상담 및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탈시설지원센터의 장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탈시설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은 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동등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의사소통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④ 센터 전담인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담을 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료상담자(장애인 동료에 대한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장애인을 말한다)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⑤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방문한 센터 전담인력이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 협박, 허위 정보 제공, 방문 거부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시설의 탈시설 준비 의무) ① 장애인 생활시설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상담 및 정보제공, 제19조제2항에 따른 단기체험 프로그램 관련 업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생활시설의 장은 탈시설 업무 전담부서 또는 전담직원(이하 “시설 전담인력”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두어야 한다.

③ 시설 전담인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제15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상담 및 정보제공 협조
2. 제19조제2항에 따른 탈시설 단기체험 프로그램 제공 협조
3. 그 밖의 탈시설 준비 및 전환, 지역사회 정착 과정에서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

제17조(탈시설 지원의 신청)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탈시설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지원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지원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장애인이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탈시설 지원의 신청 방법·절차와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탈시설 지원 대기목록 작성 등) ① 시·도지사는 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탈시설 지원 대기목록(이하 “지원대기목록”이라 한다)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1항에 따라 탈시설 지원 신청을 하였으나 그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2. 제20조에 따라 탈시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예산·인력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탈시설 지원을 받지 못한 자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② 지원대기목록 작성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탈시설 대상자 발굴 및 선정을 위한 조사) ① 시·도지사는 탈시설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 및 선정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 내 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생활시설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 탈시설에 대한 욕구조사(이하 “욕구조사”라고 한다)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제4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뢰를 받은 경우에도 신속히 욕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 내 장애인 생활시설 거주 장애인에게 적극적으로 탈시설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단기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욕구조사 및 제2항에 따른 단기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지역탈시설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탈시설 지원 대상자 선정) ① 시·도지사는 제17조에 따른 탈시설 지원 신청 및 욕구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탈시설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장애인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탈시설 대상자 선정의 기준·절차·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탈시설 대상자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① 제20조에 따른 탈시설 대상자 선정 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는 탈시설 대상자 선정 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는 제20조에 따라 탈시설 지원대상자가 선정된 경우 지역탈시설지원센터의 장에게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이하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지역탈시설지원센터의 장은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의 수립을 의뢰 받은 경우 장애인 및 그 가족의 특성을 고려하여 탈시설 지원의 내용, 방법 등이 포함된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에는 소득지원, 주거지원, 활동지원, 법률행위지원, 의료 및 건강지원, 직업 및 주간활동지원, 동료상담, 자조모임 지원을 포함한 관계 및 심리지원,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 지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욕구조사의 결과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며, 해당 장애인에게 적합한 의사소통의 방식으로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⑤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은 사회복지사, 심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의료인 및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탈시설지원 전문인력이 참여한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팀에서 수립하여야 한다.

⑥ 지역탈시설지원센터의 장은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의 승인을 시·도지사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 효력을 가진다.

⑦ 지역탈시설지원센터는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의 수립 결과를 장애인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을 통보받은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는 장애인의 욕구를 고려하여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의 변경·수정을 지역탈시설지원센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 수립의 방법·절차·내용,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의 변경·수정 요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탈시설 지원) 지역탈시설지원센터의 장은 탈시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한다.

1.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의 수립 및 이행 지원
2.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3. 탈시설 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4.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에 대한 평가 및 사후관리

5. 그 밖에 탈시설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4조(긴급탈시설지원) 시・도지사는 장애인의 탈시설이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탈시설을 즉시 지원(이하 “긴급탈시설지원”이라 한다) 하여야 한다.

제25조(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초기정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에 따라 탈시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에게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이 이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에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를 추가로 제공하여야 하고, 3년의 범위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정착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 지역사회 초기정착 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탈시설한 장애인 30명당 1명의 장애인 건강 주치의를 배치하여 필요한 경우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방문진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에 대하여 적절

한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에 따른 행동발달증진센터와 연계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추가 제공 및 정착지원금 지급, 건강검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공공임대주택의 우선제공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탈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제공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장애인이 독립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거유지지원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지역사회 통합 평가・보고) ① 지역탈시설지원센터는 탈시설한 장애인이 지역사회로 완전한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이하 “지역사회 통합 평가”라 한다)를 평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역사회 통합 평가 및 보고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장애인 탈시설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탈시설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탈시설 지원 전문인력의 양성업무를 중앙탈시설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탈시설 지원 전문인력의 양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2절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지원 및 조치

제29조(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탈시설 상황 평가·보고) ① 지역탈시설지원센터는 매년 관할 장애인 생활시설의 장애인 탈시설 상황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에는 해당 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거주의사를 확인한 결과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30조(장애인 생활시설의 신규설치 제한) 누구든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

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또는 같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을 신규로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장애인 생활시설의 전환·폐쇄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생활시설이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시설로 전환하거나 해당 시설을 폐쇄하는 경우에 필요로 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2조(장애인 거주시설등의 단계적 축소 및 폐쇄) ①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이하 “장애인거주시설등”이라 한다)은 장애인 입소정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 이내에 폐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거주시설등이 입소정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폐쇄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소정원을 축소하는 장애인거주시설등에 대하여 직원 급여지원을 일정기간 유지하는 등 장애인거주시설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장 인권침해시설에 대한 조치 등

제1절 장애인 생활시설의 인권침해 조사

제33조(인권침해 조사) ① 위원회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시설조사소위원회(이하 “시설조사소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1. 장애인 생활시설의 인권침해 조사기준 및 조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생활시설의 인권침해 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
3. 인권침해시설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4. 제44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설조사소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설조사소위원회는 장애인 생활시설의 인권침해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를 시설조사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시설조사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지원을 요청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4조(인권침해의 인지·신고, 조사대상의 선정) ① 시설조사소위원회는 장애인 생활시설 내 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 장애인 생활시설 내 인권침해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그 사실을 시설조사소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③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 한다)이나 수사기관이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행위 또는 범죄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권침해행위 또는 범죄행위에 관한 신고를 받은 경우 시설조사소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생활시설 내 인권침해에 관한 진정을 받은 경우 시설조사소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신고,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설조사소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자의 자발적인 개선 노력, 장애인 생활시설의 규모와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조사 여부를 정하여야 한다.

⑥ 시설조사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른 조사 여부 결정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신고자의 보호) ①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의 보호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신고자”로, “공익신고등”은 “신고”로 본다.

② 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벌칙에 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조사의 방법) ① 시설조사소위원회는 조사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조사대상 장애인 생활시설·운영법인의 임직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2. 조사대상 장애인 생활시설·운영법인의 임직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조사대상 장애인 생활시설·운영법인의 임직원 및 참고인, 그 밖의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하여 조사대상자의 인권침해 사실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 자료 또는 물건의 보관

4.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한 사실조회

5. 조사대상 장애인 생활시설 출입 및 장애인 생활시설 내 장소, 자료나 물건 등에 대한 실지조사

6.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② 조사대상 장애인 생활시설·운영법인의 임직원, 참고인, 감정인은 시설조사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설조사소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또는 직원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설조사소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그 권한을 행사하는 위원 또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언·감정·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시설조사소위원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 시설조사소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비·여비·일당·숙박료 등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제37조(동행명령) ① 시설조사소위원회는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 중 시설조사소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설조사소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동행명령장에는 대상자의 성명·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소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제38조(조사과정에서의 임시조치 등) 시설조사소위원회는 제36조에 따른 조사 중에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을 해당 장애인 생활시설로부터 분리하거나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에 따른 피해장애인 쉼터(이하 “피해장애인 쉼터”라 한다)로 옮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러한 조치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수사기관의 협조) ① 시설조사소위원회는 장애인 생활시설

의 조사 과정에서 해당 장애인 생활시설 내에서 범죄행위에 있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관할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조치 결과를 시설조사소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0조(시설조사소위원회 활동의 보호) 누구든지 직무를 집행하는 위원・직원이나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절 인권침해시설에 대한 조치

제41조(시설폐쇄 명령) ① 위원회는 시설조사소위원회의 조사 결과 장애인 생활시설이 제2조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시설조사소위원회의 조사 결과 장애인 생활시설이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여 그 시설을 폐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제42조(설립 허가 취소의 요청) ① 제41조제1항에 따라 폐쇄 명령

을 받은 인권침해시설의 운영주체가 법인인 경우 위원회는 해당 운영법인의 주무관청에게 설립 허가의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법인이 시설폐쇄 사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충분한 조치를 취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41조제2항에 따라 폐쇄 명령을 받은 인권침해시설의 운영주체가 법인인 경우, 위원회는 해당 운영법인의 주무관청에게 설립 허가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운영법인이 시설폐쇄 사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충분한 조치를 취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운영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43조(보조금 지급 중단) ① 위원회는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인권침해시설에 대하여 제41조에 따른 시설폐쇄 명령을 한 경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인권침해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제44조(이의신청) ① 인권침해시설의 장은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수용 여부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시설 조사결과의 통보 및 공표) ① 위원회는 시설조사소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조사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조사결과를 지체 없이 장애인 생활시설 거주 장애인 및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표·통지의 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시설 조사결과의 공개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조사소위원회의 조사로 수집된 시설 조사결과의 공개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한 사람이 제출하는 자료
2. 제3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통보가 있는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3. 제36조의 방법에 따라 장애인 생활시설을 조사한 결과 및 그에 관한 자료
4.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에 따라 실시하는 조치에 관한 자료
5. 제45조에 따른 조사결과에 관한 자료
6.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조사를 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제47조(남은 재산의 처리) ① 제42조에 따라 설립 허가가 취소되어 해산한 운영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을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48조(청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41조에 따른 시설폐쇄 명령
2. 제42조에 따른 설립 허가 취소의 요청
3. 제43조에 따른 보조금 지급 중단 요청

제3절 인권침해시설 거주 장애인의 보호

제49조(인권침해시설 거주 장애인의 보호) ① 시설조사소위원회는 제41조에 따라 폐쇄되는 인권침해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설조사소위원회는 제41조에 따라 폐쇄되는 인권침해시설의 거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인권침해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이 탈시설할 수 있도록 지역탈시설지원센터에 탈시설 욕구조사를 의뢰하는 조치
2. 제1호에 따른 욕구조사 결과 탈시설이 물리적·재정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인권침해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이 다른 시

설로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

3. 인권침해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용료·사용료 등의 비용을 부담한 경우 인권침해시설에 납부된 비용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을 인권침해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반환하게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4. 보조금·후원금 등의 사용 실태 확인과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재산 중 남은 재산의 회수조치

5. 그 밖에 인권침해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③ 시설조사소위원회는 인권침해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의 탈시설이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역탈시설지원센터에 긴급탈시설지원을 즉시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시설조사소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인권침해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권침해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보호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하나, 이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제50조(인권침해시설 거주 장애인을 위한 임시조치) ① 시설조사소위원회는 제41조에 따라 시설의 폐쇄를 명하는 경우 인권침해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이 임시로 피해장애인 쉼터로 옮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권침해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이 피해장애인 쉼터로 옮기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2. 인권침해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의 의사에 따라 인권침해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이 탈시설을 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전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피해장애인 쉼터로 옮긴 장애인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다시 탈시설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전할 수 있으며, 시설조사소위원회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장 벌 칙

제51조(벌칙) 제40조를 위반하여 시설조사소위원회의 위원・직원이나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업무수행을 방해한 자
2. 제41조에 따른 시설폐쇄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을 방해한 자

제53조(양벌규정) 운영법인의 대표자나 운영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운영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1조 및 제5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운영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운영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한 자
2. 제37조에 따른 동행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위원,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임명 등 위원회의 설립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마련을 위한 정책권고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무총리에게 장애인이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1. 범정부·민간이 참여하는 '장애인 탈시설 추진단'을 구성하기 바람.
2.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을 마련하기 바람.
   가. 탈시설 정책방향과 목표, 추진일정 및 예산
   나. 관계법령에 탈시설 및 자립생활권리의 절차보장
   다. 탈시설 전담기구 및 전담부서 설치
   라. 지역사회 전환주택 및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확대
   마. 신규 거주시설 설치 제한 및「장애인복지법」등 관련법령 정비
   바. 거주시설 변환 및 전문인력 훈련 계획
   사. 지방자치단체 탈시설 계획수립의 원칙과 지침
   아. 지역사회 기반의 다양한 주거서비스 도입
   자. 탈시설 정책 모니터링 체계 구축
   차.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공표 및 사회적 인식과 이해증진 방안

카. 미성년 장애인 및 다른 유형의 시설거주 장애인 탈시설 추진

이 유

Ⅰ. 권고의 배경

스웨덴, 미국 등의 국가들은 시설중심 서비스의 한계와 문제점을 인식하여 1970년대부터 지역사회 중심의 자립생활정책을 지향해왔으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시설·병원 중심의 서비스 추세에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대한민국의 시설중심 정책에 대해 2014. 10.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우려를 표명하면서 '효과적인 탈시설 전략을 개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 당시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복지' 국정과제 중 '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환경조성'을 실천과제로 채택하고,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에 탈시설 정책을 포함하였으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계획(2019~2022)'에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정착 지원모델' 개발을 포함하는 등 탈시설 로드맵 구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견인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우리 위원회가 2017년에 실시한 '장애인 탈시설 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및 '중증·정신 장애인 시설생활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장애인 탈시설 정책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Ⅱ. 판단 및 참고기준

「헌법」 제10조, 제14조 및 제17조,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0조,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판단기준으로 하였으며,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2014. 10. 3.)', '자립적인 삶과 지역사회 통합에 대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5호(General comment No. 5 on living independently and being included in the community)(2017. 10. 27.)' 등을 참고하였다.

Ⅲ. 판단

1. 국제사회 기준 및 권고

우리나라가 비준하고 2008. 5. 3. 발효된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이하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라고 한다) 제19조(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는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격리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이를 위해 협약 당사국은 장애인이 자신의 거주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를 가지며, 특정한 주거 형태를 취하도록 강요받지 않고, 그리고 활동보조를 포함해 가정 내 지원서비스, 주거 지원서비스 및 그 밖의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의 이행을 위해 2017. 10. 27. 일반논평 제5호를 통해 협약당사국에게,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절차상의 권리 부여', 장애인들이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권리를 알리고 권리행사 방안에 대한 이해를 지원하는 '역량강화훈련 제공', '정신장애인 및 지적장애인과 현재 시설수용 아동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시설 수용을 철폐하기 위해 구체적인 이행기간과 적합한 수준의 예산을 제시한 명확하고 목표가 분명한 '탈시설 전략의 채택', '합리적인 비용의 접근 가능한 주택', '기존 시설 및 주거서비스 탈시설 전략',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생활 이행 모니터링 메커니즘 수립', 대표단체를 통한 '협의와 참여를 바탕으로 모니터링 실시' 등을 권고하였다.

이에 앞서, 2014. 10. 3.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대한민국 정부에게 '효과적인 탈시설 전략을 개발할 것'을 권고한바 있으며, 2013. 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정신건강 케어에 대해 '장기입원방식의 시설화 모델에서 지역사회 치료 모델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다.

2. 해외 사례

2006년 유엔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채택되기 이전에 이미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완료한 국가가 있는 반면, 우리나라와 같이 협약을 근거로 하여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에 의해 장애인 탈시설 정책이 진행 중인 국가도 있다.

유럽의 국가들은 일찍이 정상화 이념[12]에 기반하여 1960년대부터 시설환경 개선과 탈시설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그 중 대표적 복지선진국인 스웨덴은 정상화 이념에 기반하여 1980~1990년에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구체적 서비스 지원과 확대를 거쳐 1997년 「특수병원 및 요양시설 폐쇄법(Law on the closure of special hospitals and nursing homes」을 통해 남아 있던 모든 장애인 수용 특수병원 및 요양시설의 폐쇄를 결정하고, 시설중심 서비스에서 지역사회에 기반한 서비스로 전환하였으며, 영국은 1980년대 후반부터 탈시설 정책에 관심을 기울이다가 1997년 제정된 「지역사회돌봄(직접지불)법(The Community Care(Direc t Payments) Act」을 통해 장애인에게 서비스 대신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장애인 당사자의 복지서비스 통제와 결정권이 가능하게 되었다. 뉴질랜드는 공동생활가정 등이 급증하면서 거주시설 이용인이 감소함에 따라 1985년 커뮤니티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선언하고 2006년까지 거주시설을 폐쇄하였다.

그에 반해 미국은 장애인 차별소송에 의한 사법부의 판결[13]이 탈시설을 가속화하였고, 이후 연방정부 및 주정부가 사법부 판결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면서 탈시설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별로 전환의 동기는 다르지만 탈시설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첫째, 거주시설의 장애인의 삶 또는 인권상황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 갖고 시

12) 정상화 원칙(Normalization principle)이란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수혜대상으로 보고 돕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어려움을 사회적 환경의 문제로 인식하고 생애에 맞춘 최대한의 제반 사회서비스를 갖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3) Halderman v. Pennhurst(1977), Olmstead v. L.C.(1999)

설 중심의 서비스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로 변경하는 국가 차원의 결단을 하였으며, 둘째, 탈시설을 위한 관련 법률이나 서비스 지원법을 제·개정하거나 정책계획을 수립·시행하였으며, 셋째, 국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장애인거주시설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지역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였고, 거주시설 중심의 예산지원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예산지원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진행해왔다.

탈시설이 부진했던 유럽연합은 2012년에 「시설로부터 지역사회 돌봄으로의 전환에 관한 유럽공동기준(Common European Guidelines on the Transition from Institutional to Community-based Care)」 및 「시설로부터 지역사회 돌봄으로의 전환에 관한 유럽연합 자금 사용법 가이드(Toolkit on the Use of European Union Funds for the Transition from Institutional to Community-based Care)」를 채택하고, 개별 국가 차원의 탈시설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며, 일본은 「장애복지계획 기본지침」에서 탈시설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추진하고 있다.

이미 탈시설이 완료된 국가에서는 장애인이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강조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가 취약한 사람들과 함께 하도록 촉진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커뮤니티 케어의 핵심내용으로 추진되고 있다.

3. 국내 현황 및 실태

가. 장애인거주시설 현황[14)]

한국사회의 장애인거주시설은 1970년「사회복지사업법」제정을 통해 정비되었으며, 1990년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의 전환과 2002년 미신고시설 양성화 대책 이후 양적으로 팽창하고 대형화되어왔다.

2000년 이후에도 장애인거주시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09년 397개소에서 2017년 618개소로 약 56% 증가하였다. 2012년에 장애인거주시설 범주에 '단기·공동생활가정'이 포함되었는데, 여기에 '단기·공동생활가정'을 포함하면 2009년 1,019개소에서 2017년 1,517개소로 약 50% 가량 증가하였으며, 거주시설 이용장애인의 수도 2009년 23,243명에서 2017년 30,693명으로 32% 정도 증가하였다.

장애 유형별로는 시설 이용 장애인 중에서 발달장애인 비율이 평균 78% 정도이며, 연령별로는 20~30대 장애인이 전체 인원의 약 50%를 차지하고, 10대도 약 1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외 2015년 기준으로 정신질환·지적장애·자폐 등의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 정신요양시설에 9,990명, 노숙인 시설에 4,089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이들을 포함할 경우, 2017년에 대략 44,700명의 장애인이 거주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같은 수치는 2017년 기준 전체 등록장애인 2,511,000명의 1.78%를 차지하며, 발달장애인(지적·자폐)의 거주시설 입소비율은 전체

14) 장애인거주시설은「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4]에 의하면 거주시설은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으로 구분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218,000명의 11.67%를 차지해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 입소율이 다른 장애유형의 장애인 입소율과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편이다.

나.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실태

우리 사회는 가족주의 정서에 의해 장애인 돌봄의 책임이 전적으로 가족에게 부여되어 왔는데, 급속한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로 돌봄을 제공해왔던 가족이 해체되거나 지역사회에 지원과 돌봄 기반이 빈약한 상황에서 장애인 돌봄에 지친 가족들에 의해 장애인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시설로 보내져왔다.

우리 위원회가 2017년에 실시한 '중증·정신장애인 시설생활인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15] 장애인거주시설에 비자발적으로 입소한 비율은 67.0%에 달하고, 입소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58.0%로 조사되었다. 비자발적 입소 사유는 '가족들이 나를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가 44.4%로 가장 높게 응답되었다. 한편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10년 이상의 장기입소자가 65.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인의 42.6%는 '시설에서 나가 살고 싶다'고 응답하였지만, 25.9%의 응답자는 퇴소의사를 표시해도 '퇴소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28.6%의 응답자는 '시설장'이, 25.2%의 응답자는 '가족'이 퇴소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퇴소 가능성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장애인도 18.0%에 이르는 것

15) 「중증·정신장애인 시설생활인에 대한 실태조사」는 2017. 7.~10. 전국의 233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중 45개소, 59개의 정신요양시설 중 30개소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선정하였고, 중증장애인 거주인 750명(현원의 29.1%), 정신요양시설 거주인 750명(시설 현원의 13.6%)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거주시설의 장애인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분리되고, 분리된 이후 10~20년 심지어 사망 시까지 살게 되는데,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거주시설로의 이전 그 자체는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 및 행복추구권에 전제된 '자기결정권'과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장애인거주시설 응답자의 52.4%는 1개 방에 '3~5명의 장애인'이 함께 거주하고, 36.1%의 응답자는 '6명 이상의 장애인'이 함께 거주한다고 답하였으며, '다른 사람이 안 보는 곳에서 옷을 갈아입을 수 없다' 38.3%, '자신이 원할 때 자유롭게 목욕하기 어렵다' 34.8%, '필요할 때 외출이 불가능하다' 38.9%, '기상과 취침 시간을 결정할 수 없다' 55.0%, '식사시간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 75.4%,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인가와 같은 '일상의 모든 생활에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다' 28.8%로 조사되었으며, 정신요양시설의 생활은 이 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16].

아무리 시설이 좋더라도 거주시설은 집단거주의 특성상 획일적 관리와 통제가 행해지고, 이 과정에서 사생활 보호와 개인의 기호 및 욕구의 반영은 매우 어려우며, 사소한 것조차도 개인이 결정할 수 없기

16) 정신요양시설 거주인의 비자발적 입소비율은 62.2%이며, 비자발적 입소 사유는 '가족들이 나를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비율이 55.7%를 차지하였다. 1개 숙소에 6명 이상 거주하고 있는 비율은 62.7%였고, 다른 사람이 안 보는 곳에서 옷을 갈아입을 수 없다는 비율은 70.7%, 목욕 시 타인에게 노출된 상태에서 하는 비율은 58.3% 등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응답자의 50.4%는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없거나, 응답자의 77.7%는 본인이 원할 때 식사를 할 수 없다고 응답하였고, 식사와 간식의 제한도 높은 편으로 조사되었다.

에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 및 행복추구권에 전제된 '자기결정권'과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장되기 쉽지 않다.

장애인도 인간으로서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지만,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분리된 환경에서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사생활은 보장되기 어려우며, 자신의 삶을 자신이 통제할 수 없고, 다양한 삶의 기회와 선택권을 제공받기도 쉽지 않다.

한국사회에서 사회복지시설은 의지할 가족이 없거나 빈곤한 장애인에게 생활지원과 돌봄을 제공하는 것에서 출발해왔고, 정부가 사회복지 재정을 확충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한 이후에도 미흡한 지원을 극복하면서 장애인에게 돌봄과 지원을 꾸준하게 지속해왔던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일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 사회복지법인들은 그 규모를 넓혀 거대법인으로 성장하였으며, '오갈 데 없는 장애인을 보호한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장애인에 대한 학대, 노동착취, 비리 등의 인권침해가 발생하였는데, 1987년 형제복지원 사건 이후, 1990년대 소쩍새마을(1994), 에바다(1996), 장항 수심원(1997), 양지마을(1998), 2000년대 들어서는 성람재단(2004), 석암재단(2008), 광주인화학교(2010), 최근까지 인강원(2014), 인천해바라기(2015), 남원평화의집(2016), 대구시립희망원(2016)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17]. 장애인에게 돌봄을 제공해온 대다수의 시설종사자들

17) 시설에서의 인권침해는 유형은 불법구금, 폭행 및 성폭행, 동의 없는 불임시술, 강제삭발 및 투약 등의 신체의 자유 침해, 외부와의 편지, 전화, 면회 검열과 제한, 핸드폰 소지 제한 등의 통신의 자유 침해, 종교 강요, 종교제한, 종교 집회 강제동원, 강제 안수 및 금식기도 등의 종교의 자유 침해, 도청, 감시카메라, 강제결혼,

이 적은 임금과 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노력해 온 점은 평가받아야 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종사자들은 인권침해의 가해자가 되거나 인권침해를 묵인해 온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위원회의 2017년 '중증·정신장애인 시설생활인에 대한 실태조사'에서도 시설거주인들은 무시(14.0%), 언어폭력(18.4%), 신체폭력(14.0%), 감금(8.1%), 강제 투약 또는 치료(6.7%), 강제노동(9.1%) 등의 인권침해를 일상적으로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정신요양시설의 거주인의 경우에는 폭력·학대 또는 부당한 대우(24.7%), 강제 격리조치(21.7%), 강박(12.4%), 강제노동(13.0%) 등 장애인거주시설보다 더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 대우 및 처벌, 폭력, 학대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는 집단시설이 가질 수밖에 없는 개인에 대한 통제와 관리로 몰 개성화, 집단적 처우로 인한 수동성, 거주시설 종사자에 대한 의존성, 지리적 격리 및 일상생활의 반복에서 시간·공간개념조차 상실되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

장애인은 지역사회와 분리된 거주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될 수는 있으나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거주시설에 입소하여 집단화된 거주환경 속에서 개인의 의사와 욕구가 제한되고, 사생활을 통제받아 왔으며, 인간발달의 기회나 개개인의 삶의 질은 생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 소지품 제한 등의 사생활 자유 침해, 열악한 의식주, 의료서비스 부재, 징벌 목적으로 음식물 제공 제한 또는 금지, 살인, 암매장 등의 생존권의 침해, 수급액, 장애수당, 장례비 등 갈취, 입소금 갈취, 신용도용에 의한 신용불량자로의 전락 등의 재산권 침해, 강제노동, 노동에 대한 대가 미지불 또는 소액 지불 등의 노동권 침해, 입·퇴소 결정권 제한, 일상에서의 자율제한 등의 자기결정권 침해가 심각해 왔다.

이런 점에서 거주시설은 구조적으로 인권침해적 요소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가와 사회는 경제발전과 성장을 거치는 과정에서 거주시설의 장애인이 처한 인권침해적 상황 개선 노력이나 장애인 개개인의 성장과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 대한 고려 없이 민간시설을 보조하고 지원하는 방법 위주의 정책을 시행하였다.

4. 국내 탈시설 정책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탈시설 추진 정책

2003년 이후 정부의 미신고 시설 양성화 정책에 대해 장애인 인권단체들이 반대하면서 장애인 탈시설 과제가 제기되기 시작했으며, 2007년 석암재단 베데스타요양원 거주장애인들이 '석암재단 생활인 인권쟁취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시설비리 척결을 위한 운동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서울특별시는 민간의 탈시설 요구에 부응하여 2008년 서울특별시정개발원에 의뢰하여 시설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탈시설 욕구조사'를 진행한 바 있고, 2010년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자립생활 체험홈을 시작하였으며, 2013년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5개년 계획(2013~2017)'을 수립하여 거주인 600명의 탈시설을 추진하였고, 2017년 수립한 '2차 탈시설 계획(2018~2022)'에는 거주인 800명의 탈시설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어, 전주시가 2015년 자림원 사건을 계기로 자림원과 자림인애원 2곳에 대해 시설폐쇄명령을 내렸으며, 욕구조사 및 탈시설 연구용역을 통해 거주인 138명에 대해 지역사회 이주 그리고 2016. 6. 21. 32명에 대해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인 금선백련마을에 전원 조치하였고, '전주시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2015~2019)'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대구광역시는 '시설거주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추진계획(2015~2018)'을 발표하고 추진하여 2018년까지 약 70명 정도 탈시설을 완료하였으나, 대구시립희망원 내 노숙인 시설 거주인들에게 탈시설을 지원하겠다는 당초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인화원 사건이 발생한 광주광역시는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 5개년 계획(2017~2021)'을 발표하고 탈시설을 추진 중이다.

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탈시설 장애인 지원정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증장애인 자립지원' 등의 조례에 근거한 체험홈·자립주택 등 탈시설 전환주거 제공, 탈시설 정착금 지급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 지원 규모가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각이다.

탈시설 장애인이 과도기적으로 자립을 체험하고 훈련하는 체험홈과 자립주택 지원은 현재 17개 광역시·도 중 14개 시·도에서 시행 중인데, 대부분 지역의 자립생활센터에 그 운영을 위탁하거나, 거주시설 안에 설치하여 시설에 위탁하고 있다. 체험홈 및 자립주택 운영보조금의 경우 연 1천만 원~6천만 원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반면, 운영보조금을 전혀 지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탈시설 정착금은 시설퇴소 후 지역사회에서 주거마련, 생활용품구매, 생활비 보조 등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현재 12개 광역시·도에서 시행 중인데, 지방자치단체마다 5~12백만원으로 편차가 큰 편이며, 대전, 울산, 충남, 세종의 경우는 지원금 자체가 없다.

지원금을 받는 대상은 기초수급 및 차상위 계층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비수급 장애인이 자립할 경우 초기 정착금과 생활비 전체를 가족이 부담하거나 스스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자립을 반대하거나 당사자가 자립을 희망해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탈시설 전환주거 및 초기 정착지원금의 차등적 지원은 장애인의 탈시설 기회를 차단하거나 탈시설 기회의 형평성을 저해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내용이 다른 이유는 장애인복지시설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 공동형식이지만, 탈시설 예산은 100%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능력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이다.

또한 탈시설 추진 계획을 갖고 있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민간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거주시설 장애인과 접촉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없기에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할 지역의 복지자원(활동보조 등), 체험홈 및 자립주택 이후 지역사회 전환 주택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2010년 설립된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서

울특별시복지재단 위탁 운영), 광주광역시는 광주복지재단 '장애인자립생활지원팀', 대구광역시는 대구희망원 사건을 계기로 대구시청 장애인복지과 내 '탈시설자립지원팀'(3명)이라는 탈시설 추진업무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나 그 외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는 업무담당자가 장애인거주시설관련 업무와 자립생활관련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탈시설 업무담당자들은 여타의 다른 업무와 달리 탈시설 업무와 관련된 근거 법령이나 지침 등이 부재하여 민간의 탈시설 요구와 시설관계자들의 강한 저항 사이에서 탈시설 추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탈시설 추진 과정에서 '탈시설' 용어와 개념이 불명확하고, 공동생활가정 및 시설 소규모화가 탈시설의 범주에 포섭되는지 등에 대한 이견으로 인한 갈등과 정책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나. 중앙정부의 장애인 탈시설 추진 정책

민간의 탈시설 요구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탈시설 정책 추진 그리고 2014년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가 잇따르자, 정부는 2018년 '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환경조성'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고,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에 '탈시설 주거지원 강화'를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정착 지원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9. 4. 15.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및 탈시설 기본방향(안)'에 대해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고, 국회는 2019. 7. 윤소하 의원 및 김영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발의되어 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탈시설 정책추진을 통해 탈시설 전환주거 등에 대한 나름의 구체적 경험과 성과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자립체험주택, 케어안심주택 및 시설 소규모화'에 국한되어 있어 위의 성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였다. 또한 추진 인력 및 예산도 미미한 상황이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의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어려움을 해소하고, 전국적으로 이를 확산하기에는 미흡하다.

또한 장애인 탈시설 관련 계획안과 법안이 발표되었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거나 추진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5. 개선방안

가. 국가 차원의 탈시설 정책의 필요성과 기본 전제

외국의 탈시설 정책 추진 사례를 볼 때, 1960년대부터 거주시설의 장애인의 삶과 인권상황에 대해 관심을 갖고, 국가차원에서, 시설중심 정책에서 지역사회중심 정책을, 수십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전환해온데 반해, 우리나라는 거주시설의 인권침해사건이 반복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거주시설의 인권상황이나 장애인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나 근본적인 해법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

2014년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우리나라에 권고한 '탈시설 전략

수립'을 기회로 민간과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장애인 탈시설은 진즉 시작되었으나, 국가차원의 구체적 계획과 정책의 부재, 이로 인해 탈시설 개념과 범주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과 정책 혼동, 이해관계자들의 갈등, 지방자치단체 간 탈시설 지원책 격차로 인한 탈시설 기회의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에 대한 가장 큰 피해자는 거주시설의 장애인이다. 오랜 시설생활로 다양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탈시설 기회 차단은 2차적 피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를 둘러싼 가족, 시설운영자 및 종사자 모두가 탈시설 정책의 혼란과 갈등의 피해자일 수 있다.

오랜 시간 거주시설 장애인을 위해 헌신과 노력을 기울여온 대다수 시설운영자와 종사자는 탈시설 논의가 확대되면서 거주시설이 마치 인권침해의 온상으로 평가되는 것에 대해 심한 자괴감과 실망감이 크고, 한편으로 종사자들은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다.

사회 및 경제성장으로 인해 개인의 삶의 질이 중시되면서 장애인거주시설 중심의 정책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의 전환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갈등과 반목보다는 모든 구성원이 탈시설 흐름을 인정하고, 탈시설 정책을 추진한 국가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분석하고 논의와 협의를 통해 보다 슬기로운 탈시설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또한 장애인 탈시설 정책은 모든 형태의 주거형 수용시설에서 지역사회의 보편적 주택으로의 전환만이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가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살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

며,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지원과 돌봄을 받으며, 서비스를 주체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의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기반이 부족하여 탈시설 장애인이 여러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으나, 지역사회의 충분한 준비를 전제로 탈시설 욕구가 있는 장애인을 무한정 기다리게 하는 것보다는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기반 마련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장애인의 욕구 해소와 정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도 '탈시설 등 지역사회정착 환경조성'을 국정과제로 채택한 것이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국가차원의 장애인 탈시설 정책의 수립 및 이행이 필요하다.

나. 범정부·민간이 참여하는 「장애인 탈시설 추진단」 구성

이상과 같이 탈시설 정책은 '분리된 거주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보편적 거주서비스' 정책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데, 단순히 거주시설을 지역으로 옮기는 것뿐만 아니라 의료·돌봄, 주택, 지역사회의 이동·교통·정보접근, 장애인 자립생활에 대한 인식과 이해, 소득·일자리, 안전 등 다양한 요소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무엇보다 탈시설의 제1요소는 '주택'이며, 거주시설에서 지역사회 거주서비스로의 전환이 완전히 이뤄지기 전의 과도기 단계에서 탈시설 추진을 위한 별도의 예산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장애인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단독으로 추진하기보다는 관계부처의 상시적이고 유기적인 협의가 필수적이다.

또한 장애인 탈시설과 관련하여 거주시설의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장애인인권단체,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폭이 넓으며, 이해관계의 충돌이 심각한 만큼 범정부·민간이 참여하는 '탈시설 정책 추진단'을 구성하여 추진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다. 국가차원의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수립

탈시설을 완료한 유럽 국가들은 행정부의 결단과 계획에 의해, 미국은 사법부가 탈시설 정책으로의 전환점을 마련하고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에 의해 진행되어왔다.

이렇듯 우리나라에서도 인권관점에서 기존체계의 한계를 넘어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을 시설중심이 아닌 지역사회 자립지원 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결단과 단계적 계획(로드맵)이 요구되며, 탈시설 로드맵에는 아래와 같은 것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1) 국가 차원의 탈시설 정책방향과 목표, 추진일정 및 예산

지방자치단체의 탈시설 정책 추진 과정에서 탈시설 개념 및 방향이 제시되지 않은 이유는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 시설운영자 및 종사자, 인권단체 등 관련자들 사이에 탈시설 개념을 둘러싸고 의견의 합치를 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차원에서 탈시설 정책방향과 목표를 분명히 함으로써 탈시설의 개념을 둘러싼 논란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탈시설(deinstitutionalization)'이라는 용어는 유엔 장애인권

리위원회를 비롯해 유럽연합 등의 국가에서 이미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개념이며, 단순히 물리적인 거주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가 서비스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자립생활을 영위함이 목적임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또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우리나라 및 협약당사국에 권고한 대로 모든 종류의 고립과 격리 및 시설 수용을 철폐하기 위한 목표를 분명히 하고, 구체적인 이행기간과 탈시설을 위한 예산을 분명히 해야 한다.

2) 「장애인복지법」 등 관계법령에 탈시설 및 자립생활권리의 절차 보장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탈시설 정책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과 관련된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되었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의 유무 및 그 내용이 달라서 보편적이고 적극적인 탈시설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자립생활이 시설보호에 우선한다는 자립생활 원칙과 이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책임을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탈시설 개념, 절차와 당사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정기적인 욕구조사,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주택공급, 초기정착금 지원, 탈시설지원계획수립,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여 탈시설에 대한 절차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 시설의 장애인을 시설 밖으로 전환하는 것도 중요하나

시설 신규입소로 또 다시 시설화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한 만큼, 탈시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주시설 신규 입소 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가능한 지역사회에서 거주공간을 먼저 마련하도록 심사 절차를 정비하여야 한다.

2019. 7. 1. 장애인등급제의 단계적 폐지에 따라 시설입소를 희망하는 경우에 종합조사표에 의해 시설입소자격을 평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시설을 입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탈시설 개념의 거주서비스가 확정되기 전 과도기에는 지방자치단체 내 민관합동의 '거주시설 입소판정위원회'와 같은 심사기관을 두는 등의 방법으로 지역사회 거주를 위한 조치가 우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시설입소 여부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탈시설 전담기구 및 전담부서 설치

장애인 탈시설은 거주시설 내 개별 장애인에 대한 접근이기보다 그 개인이 놓여 있는 거주시설과 지역사회 등 사회구조적인 접근방식이 유효하며,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개별 업무담당자에 의한 업무추진보다는 최소한 팀 단위의 전담부서 및 전담기구가 요구된다.

또한 전담기구는 기존 거주시설의 변환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하므로 최소한 준공공성을 가지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4) 지역사회 전환 주택 및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확대

탈시설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주택과 소득이라 할 수 있는데, 오랜 기간 시설에 거주한 장애인의 경우 주택자금 마련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탈시설 시 부양의무제로 인해 수급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므로 탈시설 장애인에게는 공공임대주택 분양 시 일반 장애인보다 가점을 더 부여하고,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제 기준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것이다.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제 폐지는 이미 정부도 그 당위성을 인정하여 여러 차례 개선을 약속해 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된다.

아울러 24시간 돌봄과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위해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등의 지역사회복지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서비스 기반을 조성하여야 하며, 특히 주간보호서비스는 장애정도 등을 고려한 인력배치가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5) 신규 거주시설 설치 제한 및 「장애인복지법」 등의 관련법령 정비

현행 「장애인복지법」상으로는 신규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없으나 향후 탈시설 정책 추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외국의 사례에서도 확인하였듯이 탈시설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거주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탈시설 정책의 방향성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는바, 거주시설 설치 근거가 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의 정비가 요구된다.

6) 거주시설 변환 및 전문인력 훈련 계획

탈시설을 완료한 해외 국가의 경우 국·공립 시설은 국가가 주도적

으로 시설을 축소하거나 폐쇄해왔으나, 민간시설의 경우 강제적인 축소에는 한계가 있었다.

현재까지도 탈시설이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 민간시설의 축소 및 변환을 강제하기보다는 민간시설로 하여금 일정 요건을 갖추게 하고, 자발적으로 구조와 기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일정 기간 동안 민간이 자발적으로 거주시설을 변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후에는 시설 설치·운영 기준과 보조금 지급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국가가 탈시설 개념에 부합하는 지역사회 거주서비스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 민간이 자발적으로 거주시설을 축소 또는 변환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자문을 지원하며, 또 이 과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법인 시설인 경우 다른 목적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고, 재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종사자의 실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거주시설별로 민관이 합동으로 '탈시설 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거주시설 축소 및 변환과 거주 장애인의 지역사회 전환, 종사자의 재배치를 유도하는 것이다.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및 서울특별시의 제2차 탈시설 계획은 시범사업을 통해 시설 기능 전환 모델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으나, 시범사업이 확장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

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거주시설 축소 및 변환은 거주시설의 유형과 거주인들의 특성, 지역 여건이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별로, 거주시설 유형별로 맞춤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기존 거주시설 중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6 [별표 5의5] 장애인복지시설 행정처분기준(제44조의6 관련), 「장애인복지사업안내」를 통해 시설장 교체 및 시설폐쇄 행정조치가 내려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내용 동기와 그 결과를 고려하여 1회에 한하여 시설장 교체의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시설폐쇄의 경우에는 시설장 교체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을 완화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 규정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 폐쇄를 보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법령상의 조치가 단호하게 내려질 수 있도록 관련 시행규칙과 지침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거주시설 중심의 정책에서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로 전환되는 경우 돌봄노동자의 역할은 유사할 수 있으나, 서비스 철학과 원칙, 구체적인 역할과 기능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서비스 인력에 대한 훈련 등이 필요하므로, 전문인력 직무훈련 및 보수교육 시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7) 지방자치단체 탈시설 계획수립의 원칙과 지침 마련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균등하게 탈시설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며 어느 지역의 거주시설에 거주하든지간에 탈시설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탈시설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보편적인 탈시설 원칙과 기준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탈시설 정책 수립의 원칙과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8) 지역사회 기반의 다양한 주거서비스 도입

현재로서 지역사회 주거유형은 독립주거 이외 공동생활가정이 유일한 대안이나, 현행과 같은 공동생활가정은 거주시설에서 관리·운영하기 때문에 주거 및 서비스 통제권이 여전히 시설에 있어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자립생활을 보장하고 증진하는데 일정 정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장애인거주시설 중심 정책이 실질적 변화를 가지려면 주거에 대한 권리가 장애인에게 있어야 하며, 장애유형·정도·연령을 고려하여 지역사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다양한 주거서비스가 지원되어야 한다.

서울특별시가 2019년부터 보급하게 되는 지원주택이 그 사례일 수 있으며, 지원주택 이외에도 지역기반의 주택과 복지, 주택과 의료케어가 복합된 형태의 주거서비스 모델 등 지역사회 기반의 다양한 주거서비스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전국 주택공급을 담당하는 LH공사가 지원주택 등의 주거복지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체험홈 및 자립주택 이후 지역사회에서 본인의 의사와 도

움의 정도에 따라 주거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서비스 도입이 병행되어야 한다.

9) 탈시설 정책 모니터링 체계 구축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탈시설 정책에 대한 성과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부족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정책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가 미비한 상황이다.

시설화의 근본적인 문제가 당사자의 참여와 선택권을 배제하고 억압한 것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탈시설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장애인의 선택권과 주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본권의 기초를 다지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도 대표단체를 통한 장애인과의 협의와 이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모니터링 수행 등을 권고하고 있는 만큼, 지역별 및 중앙단위에서의 모니터링과 평가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탈시설 정책의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위해「장애인복지법」제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및 제11조(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따른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이행을 감독·평가하는 등의 절차 규정을 구체화 하여야 하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도 이와 같은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10)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공표 및 사회적 인식과 이해증진 방안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 제5호를 통해 협약 체결 이후 10년 동안 탈시설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요소 중 하나로 '지역 사회 내에서 독립적으로 살 권리에 대한 오해'를 지적하고 있다.

국가 차원의 탈시설 로드맵 공표를 통해 장애인 탈시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당사자, 가족이 탈시설에 대해 이해하고 지역사회 전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11) 미성년 장애인 및 다른 유형의 시설거주 장애인 탈시설 추진

미성년 장애인은 지금과 같은 장애영유아 시설 또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집단적 돌봄보다는 세심하고 개별적인 돌봄이 요구된다. 비장애아동과 같은 가정위탁 등 최소한의 제한적 환경에서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주거서비스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노숙인 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다른 유형의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와 욕구조사를 통해 탈시설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들이 탈시설 지역사회 전환과정에서 결코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2019. 8. 22.

위 원 장　　최 영 애

위　　원　　정 상 환

위　　원　　최 혜 리

MEMO

MEMO